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제1482호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조 례

○ 조 례 제 1 5 4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폐지조례 5
○ 조 례 제 1 5 4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조 례 제 1 5 4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조 례 제 1 5 4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조 례 제 1 5 4 6 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
○ 조 례 제 1 5 4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조 례 제 1 5 4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조 례 제 1 5 4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조 례 제 1 5 5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조 례 제 1 5 5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조 례 제 1 5 5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조 례 제 1 5 5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조 례 제 1 5 5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조 례 제 1 5 5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조 례 제 1 5 5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조 례 제 1 5 5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조 례 제 1 5 5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 조 례 제 1 5 5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 조 례 제 1 5 6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 조 례 제 1 5 6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 조 례 제 1 5 6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 조 례 제 1 5 6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조 례 제 1 5 6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조 례 제 1 5 6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 조 례 제 1 5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 조 례 제 1 5 6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조 례 제 1 5 6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 조 례 제 1 5 6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조 례 제 1 5 7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 조 례 제 1 5 7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 조 례 제 1 5 7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 조 례 제 1 5 7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 조 례 제 1 5 7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 조 례 제 1 5 7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 조 례 제 1 5 7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 조 례 제 1 5 7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 조 례 제 1 5 7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조 례 제 1 5 7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43
○ 조 례 제 1 5 8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 조 례 제 1 5 8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 조 례 제 1 5 8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 조 례 제 1 5 8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 조 례 제 1 5 8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 조 례 제 1 5 8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 조 례 제 1 5 8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68
○ 조 례 제 1 5 8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 조 례 제 1 5 8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 조 례 제 1 5 8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 조 례 제 1 5 9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 조 례 제 1 5 9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3
○ 조 례 제 1 5 9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 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 186
○ 조 례 제 1 5 9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8
○ 조 례 제 1 5 9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 조 례 제 1 5 9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6

○ 조 례 제 159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200
○ 조 례 제 159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 조 례 제 159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8
○ 조 례 제 159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
○ 조 례 제 160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14
○ 조 례 제 160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7
○ 조 례 제 160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3
○ 조 례 제 160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6
○ 조 례 제 160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30
○ 조 례 제 160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6
○ 조 례 제 160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9
○ 조 례 제 160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42
○ 조 례 제 160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4
○ 조 례 제 160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7
○ 조 례 제 1610 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51

규 칙

○ 규 칙 제 1003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324
○ 규 칙 제 100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327
○ 규 칙 제 100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335
○ 의 회 규 칙 제100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340

훈 령

○ 훈 령 제 36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342
○ 훈 령 제 36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352
○ 훈 령 제 36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규정 361

공 고

○ 공 고 제 1169 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68
○ 공 고 제 1191 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공시 384
○ 공 고 제 119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85
○ 공 고 제 120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406
○ 공 고 제 1205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409
○ 공 고 제 1207 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12
○ 공 고 제 1210 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415
○ 의회사무국공고 제 106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07 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40
○ 의회사무국공고 제 108 호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51
○ 보건소공고 제 5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461
○ 보건소공고 제 5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462
○ 보건소공고 제 5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463

고 시

○ 고 시 제 7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64
○ 고 시 제 80 호 2018회계연도 결산 고시 467
○ 고 시 제 81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472
○ 고 시 제 82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496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2008년 남동구의회 발전과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정 및 운용되었으나,

○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SNS, 신문고, 홈페이지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및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있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여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를 폐지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을 “남동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를 “「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를 “「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제1482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6. 28.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속 :
직위 :
성명 :

귀하를 남동구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정원에 대한 중복조항 삭제 :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의원”을 각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이”를 “어느 하나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의”를 “어느 하나의”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을 “남동구의회 의장”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로, “1에 해당하는 자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제9조제2항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보상금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보상금의”를 “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의 간사)”를 “(간사)”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를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사”를 “조사ㆍ연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의정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남동구 의정회”를 “그 밖에 의정회”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의정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확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계획 등의 승인 규정 정비 : (제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6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심의회·협의회·협의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실·과·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동일인의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자가 모집 인원에 부족할 때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때

3. 긴급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때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3.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구청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존속 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분과(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의 장 또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조례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2조~ 제3조)
○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0조)
○ 위원회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4조)
○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안 제4조)

○ 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 제3장(제14조 ~ 제2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따라 남동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민간위탁”이라 함은”을 ““민간위탁”이란”으로,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기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구민”으로, 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남동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안 제2조)

○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8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구성하며”를 “구성하며,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 1명과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 등)”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이외에”를 “그 밖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보조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의하여”을 “따라”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운영 등)”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기금설치의 제한)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
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3.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가능성
4.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
5. 구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제53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

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2조의 제목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기금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합기금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위원회”를 “통합기금 위원회”로 한다.

제63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7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7조~제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11조~제15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44조~제45조)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49조~제50조)
○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61조~제6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기관 (이하"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 남

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하고,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회의록) :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을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호에”를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ㆍ교육자 또는”을 “법관, 교육자,”로, “풍부한”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의원 1명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행정국장

제2조제2항 중 “선임한다”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남동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의”를 “구의회 제2차 정례회”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을 “(회의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 등)”을 “(간사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 (제4조)
○ 회의에 관한 사항 :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셜미디어”라 함은”을 ““소셜미디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셜채널”이라 함은”을 ““소셜채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셜ID”라 함은”을 ““소셜ID”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소셜민원”이라 함은”을 ““소셜민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셜민원창

구”라 함은”을 ““소셜민원창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콘텐츠”라 함은”을 ““콘텐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콘텐츠”라 함은”을 ““행정콘텐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셜기자”라 함은”을 ““소셜기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소셜댓글”“이라 함은”을 ““소셜댓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 함은”을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21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을”로,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관하여 전문성”을 “전문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셜부서의 소셜업무”를 “소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제26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8조)
○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제2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후생복지제도”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시행함에 있어”를 “시행할 때”로, “적정한”을 “적절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를 “남동구 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도”를 “사람도”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같은 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단,구산하”를 “단, 구 산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증빙서

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조직)”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간부”를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및 서기 각”을 “1명과 서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당”을 “적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제6조)
○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 (제7조)
○ 위원회 일반 규정 정비(위원장의 직무, 실비변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획득한”을 “거둔”으로 하고, “개인에”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를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를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구공적심의회”를 “공적심의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구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공적심의회”를 “공적심의회”로, “1인”을 “1명”으로,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구공적심의회”를 “공적심의회”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안 제1조)

○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1482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6. 28. 금요일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2제4항의 규정에 의

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분야에 있어서”를 “관련분야에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같은 조 제10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담에 있어서”를 “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참 고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 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 명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참 고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남동구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참 고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남동구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참 고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동구 및 ○○○동(○책 중 ○권)
※「주민투표법」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 명 일 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을 상세히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참 고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참 고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반수”를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1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생활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31조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19조)
○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를 "남동구금고"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등 변경 : (제3조,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10조,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을 “남동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서”를 “인천남동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위원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등 변경 :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정비 : (제5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를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그 밖에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3조)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 간사에 관한 사항 :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2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3조)
○ 지명위원회 규정 정비 (수당, 회의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이라 함은”을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을 ““시설의 사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라 함

은”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제1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을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물·자료”라 함은”을 ““유물·자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집”이라 함은”을 ““수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장품”이라 함은”을 ““수장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이라 함은”을 ““이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여”라 함은”을 ““대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대관”이라 함은”을 ““대관”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을 “소래역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를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회”를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역사관의 운영책임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제11조)
○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2조)
○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및 여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남동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2조, 제3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제23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제7조에 따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4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남동구문화원장”을 “남동문화원장”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남동구문화원장”을 “남동문화원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3조, 제7조)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20조)
○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44조)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 정비(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개최 등, 의견청취 등, 위원의 해촉, 실비보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각각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각각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구성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각각 “남동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인천광역시”를 “남동구청 운동경기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3조, 제4조, 제8조)

○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13조)

○ 협의회 규정 정비(의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수당 등의 지급)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공개사무”를 “정보공개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정보공개책임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서식 내지"를 "서식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규정 정비(위원의 해촉, 심의회 운영)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결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1조~ 제3조)
○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4조)
○ 회의에 관한 사항 : (제9조)
○ 위원회 일반 규정 정비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록 작성 등)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위원장ㆍ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3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6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1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공무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계약심의위원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려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와 서기 각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2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을 “금고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회 의원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범위에서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1 제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본청”을 “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5.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협의회”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및 서기 각”을 “1명과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업 추진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를 폐지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

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하게 함(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하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공동브랜드 명칭

- 한글 : 남동GO / 영문 : Nadogo
  (국내용) (해외용)

※ 의미 :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남동구와 남동구 중소기업의 비전을 강조하는 안으로 남동구와 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여 간다는 의미의 표현

남동구 공동브랜드 도안

국 내 용	국 외 용

[별지 제2호 서식]

-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

사 용 약 정 서

남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대표(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남동GO(Nadogo)"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의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표 사용권 허용)

① "갑"은 "남동GO(Nadogo)" 상표의 사용약정기간 (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약정서에 허용된 조건하 에서 상표 사용 권리를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사)에게 양도하거나 재 허용 할 수 없다.

② "을"은 약정기간 중 상표사용 적용 대상 제품(이하 "약정제품"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 조 (약정제품)

① 약정제품 :

② 1항에 명시된 제품에 한하여 "남동GO(Nadogo)" 상표를 부착 판매 할 수 있다.

③ 약정제품 상품은 생산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참여기업이 약정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④ 약정 제품간에 상호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상표 사용)

① "을"은 "남동GO(Nadogo)"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정립 및 남동구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남동GO(Nadogo)"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로고, 마크 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을"은 약정제품에 필요한 모든 TAG, 라벨, 포장물 및 광고물, 판촉물 등에 "남동GO(Nadogo)"상표를 사용할 경우 "갑"에게 사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약정 기간)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 6 조 (광고 및 판촉)

① "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남동GO(Nadogo)"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약정기간 동안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 약정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시장개척활동 등을 통한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브랜드 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판로개척)

① "을"은 약정 제품의 국내 판매장소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매장, 전문 전시 판매장, 대리점 및 특약점, 일반 잡화상점 등에 한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노점 판매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판로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조 및 품질관리)

① "을"은 본 약정에 적용되는 제품과 그 제품포장이 "남동GO(Nadogo)" 상표의 이미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모양, 개성 등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남동GO(Nadogo)"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의 견본이나 원본을 수거하여 정부 공인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이 품질검사 결과 "을"이 제시한 견본이나 원본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동 제품에 대한 "남동GO(Nadogo)"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본 약정제품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하자 및 소비자 피해 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갑"은 약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을"의 사무소, 사업장, 창고, 또는 판매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제품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0 조 (약정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 제1항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을"이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을"이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을"이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을"이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7. 기타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경우

② "갑"은 "을"이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월이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약정 해지 의사를 표명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을 제외한 **남동**GO(Nadogo) 상표 사용권 허용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을"의 약정 해지를 요청한 경우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 본 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는 본 약정에 따라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즉시 귀속된다.

② 본 약정이 만료된 후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남동**GO(Nadogo)" 상표나 기타 동 상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기만적으로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본 약정의 해지 통보일로부터 "갑"과 "을"은 공동으로 **남동**GO(Nadogo) 브랜드 부착품 수량 조사를 실시하여 재고품 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남동구 브랜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타 사항)

①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을"이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 모두가 남동구 공동브랜드**남동**GO(Nadogo) 육성사업을 공동이행할 경우에만 본 약정이 유효하다.

제 13 조 (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 . . .

"갑" 남동구청장

"을" _____ 대표(대표이사)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6조)

○ 임기에 관한 사항 :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기관”이란”으로,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을 ““이자차액보전금”이란”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제9조제3항제2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수립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9조)

○ 기능에 관한 사항 :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남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위

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등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에너지 위원회 규정 정비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설치)”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업 추진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사업 추진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를 폐지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농업위원회의 폐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남동구 농축수산과장”을 “농축수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본문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있다, 위탁하고자”를 “있으며, 위탁하고자”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

○ 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정비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불분명한”을 “분명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접수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		
	지급은행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망자 화장내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		
구비서류	1. 화장 증명서 1부. 2.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4. 사망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20일 이내 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변경 :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복지관의 사용”이라 함”을 ““복지관의 사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라 함은”을 ““허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다”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ㆍ「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복지관 자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복지관 자체운영위원회 임의규정 변경 : (제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를 “구성하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4조 ~ 제15조, 제24조, 제2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 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 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은 없으며,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지원코자 제정한 조례로,

○ 2018.11.5. 인천시 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조례가 시행되어,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예정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함이 타당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년차계획의 수립 조정”을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제2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위원장”을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남동구의회 의원

제3조제4항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을 “부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심의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

1. 안전대책 소심의회

2. 중복굴착 소심의회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간사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 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제2조)

○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

○ 소심의회에 관한 사항 :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유량계"라 함은"을 ""유량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이행보증금"이란"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지하수관리위원회"를 "남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를 "법 제30조의2에 따라"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제6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7조)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효율적관리에”를 “효율적 관리에”로 하고, “등에 관하여”를 “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이하・・보조금・・”를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가목 및 나목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7조의2 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를 “호에 해당하는”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3조, 제11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6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내의”를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0퍼센트”를 “전체위원의 3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제3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사.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아.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자.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사람은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제5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조 및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6개월”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의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를 “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를 “남동구 경관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남동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간사와 서기 각각”을 “간사 1명과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를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2조)

○ 경관계획수립권자 책무 : (제4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자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로, “포상할”을 “표창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2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5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2조,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제7조, 제8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금고나”를 “금고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본문 중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제3조)

○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7조)

○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를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를 "남동구청장"로 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남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1인 이상이"를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건축사법·"를 "「건축사법」"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사법·"를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를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로, “취 득한 자(분야별로 1인”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 중에서 1인”을 “사람 중에서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각각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 남동구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별지 제13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 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수량 및 면적 (㎡)	⑥신청금액 (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일반형	1,000원			1면 기준
		족자,깃발형 현수막	500원			1면 기준
	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A4용지 초과	3,000원			100매 기준
		A4용지 이하	2,000원			1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⑨수량 및 면적(㎡)	⑩지급예정액 (원)	⑪ 담 당 자	
	현수막	일반형			소속:	
		족자,깃발형 현수막			직급:	
	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A4용지 초과			성명: (인)	
		A4용지 이하			확인일시:	

※ 지급결정내역(⑨-⑩)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2조)

○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및 위원)”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우에는・・원안 의결””을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위원장”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비교통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3조제3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구 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중 “및 서기 각”을 “1명 과 서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지닌 사람

제5조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30분”을 “1시간”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3조제1항 부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

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구청장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19조제

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로, “부살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_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로, “예산범위 내”를 “예산 범위”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금융기관”을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8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2조)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 (제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보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보 또는 남동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제9조제4호(종전의 제2호) 중 “관보 및 구청 홈페이지”를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로 하고 “홍 보지원”을 “홍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별표1의 1. 공통사항 중 가호 및 라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의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남동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을 위하여 모범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및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제3조)
○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제5조 [별표1])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을 “남동구민”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지원에 관하여”를 “지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봉사자에게”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으로 한다.

제10조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필요한 경비 중 “교통비 등” 추가 명시 :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웰다잉 문화확산 및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상담실과, 전문상담사,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등록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14조”를 “시행령 제3조”로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2인”를 “2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임의규정 변경 :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매년”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센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수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일체를 반환하여야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명시 :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조례 제1610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정비) 남동구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남동구 조례의 본문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별표 1】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등 정비(제2조 관련)

연번	부서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1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2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제2조제1항	의원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제2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3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남동구의회
			제2조제1항	의회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4	의 회 사 무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남동구의회 의장이 남동구의회 사무국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
			제2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

5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남동구---남동구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남동구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6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남동구 공인 조례」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7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8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9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8조제3호	남동구	구
			별표1 명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남동구보건소
			별표1 명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건강관리센터	남동구 간석건강관리센터
			별표2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10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1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2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13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4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5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6	소통협력 담 당 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7	감 사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2조제3항,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8	감 사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9	홍 보 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남동구보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보	남동구---남동구보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보---남동구청장
20	홍 보 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정보화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정보화 조례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 제2조 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21	홍 보 미디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22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남동구 구민의 날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	<삭제>
23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24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남동구청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삭제>---남동구청---남동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남동구청장
25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3항	남동구청장	구청장
26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	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남동구
27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남동구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8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 제2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29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30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민	남동구민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31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32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33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34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35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36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37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38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남동구청

		에 관한 조례			
39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0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41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남동구민	남동구민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42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43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5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44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제2항 제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의장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45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6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47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48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49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남동구
			제3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50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51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6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52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1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53	안 전 총 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54	문화관광 체 육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삭제>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55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삭제>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56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삭제>---남동구청장
57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6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남동구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8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59	민원봉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남동구 공인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60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1조제1항, 별표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61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9조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62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1조제1항, 제2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63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64	청 소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65	재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별표	인천광역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별지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남동구---남동구의회의장
66	재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남동구
			제5조 제목	(구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
			제7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67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68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69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남동구 구세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70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남동구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71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제2호가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 남동구
72	세 입 징 수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6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73	세 입 징 수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단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8조제1항 제10호다목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표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74	세 입 징 수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 증지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 증지 조례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 제2조 제1호, 별표1, 별표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75	일 자 리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3항제 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의장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76	일 자 리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표창 조례」

				표창 조례」	
77	일 자 리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남동구
			제5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78	기 업 지 원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79	기 업 지 원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 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조례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남동구 표창 조례」
80	기 업 지 원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81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82	생 활	인천광역시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

	경 제 과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83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84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85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86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7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3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87	농 축 수 산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88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89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장---남동구
90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삭제>---남동구---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91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남동구
			제4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92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0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93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94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제3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6조제4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1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9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95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2항 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96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97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98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9조제2항 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남동구의회의장이
			제2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99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00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훈회관	남동구 보훈회관
			제2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101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02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03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표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04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실비변상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05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삭제>
106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민	남동구민
107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108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09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10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2호가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11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12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민---남동구
113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7조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4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제3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3항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15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16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남동구
117	가정복지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2호, 제2조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118	가정복지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남동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3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19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성 평등 기본 조례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2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
			제25조제3항 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25조제3항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4조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4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20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남동구 표창 조례」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121	가 정 복 지 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
122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차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9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
123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위원 및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위원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24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125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8조	실비변상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삭제>
			별표 2~별표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26	가 정 복 지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6조제2항 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6조제2항 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제6조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남동구---「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조례	「남동구 포상 조례」
127	보 육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남동구청장
128	보 육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29	보 육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단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1조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130	보 육 정 책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청장
131	평 생 교 육 과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32	평 생 교 육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민	남동구청장---남동구민

			제5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1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33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7조제2항 제2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 지원청
			제7조제2항 제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남동구의회
			제7조제2항 제5호	동부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 지원청
134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의회의장이
			제1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유아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35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2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0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남동구 물품 관리 조례」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36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9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제9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남동구 구민상 조례」
137	건설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제14조제2항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38	공영개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39	공 영 개 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0	공 동 주 택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1	공 동 주 택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남동구 공동주택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남동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2	공 동 주 택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삭제>---남동구---남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남동구청장---남동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남동구---남동구
143	교 통 행 정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3조제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44	보 건 행 정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2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145	보 건 행 정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남동구 보건소
146	보 건 행 정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남동구 보건소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7	보 건 행 정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5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8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49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남동구보
150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남동구민의
			제2조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51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남동구청장
152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4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153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8조제2항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	남동구 보건소장
154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남동구 치매센터
			제2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 관리 조례」
155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156	다문화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6조제3항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의장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남동구 표창 조례」
			제2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물품 관리 조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157	다문화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제1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	「남동구 표창 조례」
			제1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물품 관리 조례」「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별표 2】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제3조 관련)

연번	부서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1	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소요되는	드는
			제8조	아니한다.	않는다.
			제8조 단서	아니한	않은
2	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3	의회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의회사무국	남동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사무국---사무국
			제3조	의회사무국---상당한---제2조 제1항	사무국---적정한---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의회사무국	사무국
			제5조	통보한다	알린다
			제6조	의회사무국	사무국
4	기획예산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1조	외국귀빈(이하 "귀빈"이라 한다)---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외국 귀빈---명예 구민증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명예구민증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외빈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제4조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 따라
			제4조제1항	자	사람
			제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	자	사람
			제5조제1항	의한다	따른다
			제5조제2항	의한다	따른다
			제8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5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의 부분	자	사람
			제8조제1항 제1호	자	사람
			제8조제1항 제2호	자	사람
			제12조제2항	의한	따른
6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의하여	따라
			제1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7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1항	「지역보건법」(이하 “보건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5조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로 통할하고,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를 수행한다.
			제16조제1항	법 제14조	법 제114조
			제16조제2항	별표1-2	별표1의2
			제17조	통할하고	처리하고
			제19조제1항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	법 제3조제3항
			제21조	통할하고	처리하고

8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조	의하여	따라
9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4조제1항	의한다	따른다
			제25조	의한다	따른다
			제26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26조제2항	의한다	따른다
			제27조제4항	법 제66조의2의 의한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사항은는	사항은
			제3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10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 제목	위촉 해제	해촉
			제5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위촉 해제	해촉
			제7조제2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4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7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11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6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조례			
12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13	기 획 예 산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	사항에 관하여	사항을
			제5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5조제3항	의한	따른
			제5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5조제5항	공표에 관하여는	공표는
			제9조제1항	의한다	따른다
			제9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13조제3항	제39조의2에 따른다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22조	준용하며	따르며
14	소 통 협 력 담 당 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조제1항 제4호	자를	사람을
			제4조제2항	자로	사람으로
			제5조제1항	자를	사람을
			제5조제3항	자	사람
			제5조제3항	자는	사람은
			제8조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할 때에는
			제13조제2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16조	처리함에 있어	처리할 경우에는
			제22조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4호	법령에 의하지 않고	법령에 따르지 않고
			제24조제2항 제5호	처리 등에 있어	처리 등을 할 때에
			제28조제2항	기타	그 밖에
			제32조	자는	사람은
			제34조	자는	사람은
			제36조	자는	사람은
15	감 사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조	법 제16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16	홍 보 미 디 어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제4조제8호	의한	따른
			제5조	의한	따른
			제6조	의하여	따라
			제6조	사항에 대하여	사항은
			제9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17	홍 보 미 디 어 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4조(제목)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첨단 스마트 도시의 추진)
			제14조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
18	홍 보 미 디 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	제2조제1호	“인터넷”이라 함은	“인터넷”이란

	실	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시스템”이란
			제2조제3호	“홈페이지”라 함은	“홈페이지”란
			제2조제4호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인터넷 민원”이란
			제2조제5호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민원창구”란
			제2조제5호	의한	따른
			제2조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란
			제2조제6호	의한	따른
			제2조제7호	“비밀번호”라 함은	“비밀번호”란
			제6조제2항 단서	자의	사람의
			제8조제1항	의한	따른
			제8조제4항	의한	따른
			제8조제5항	당해	해당
			제9조제2항	의한	따른
			제10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12조제3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19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제1조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구민의 날
			제3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20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제2조제2항	의한다	따른다

		복무 조례			
			제4조	사용하여서는 아니	사용해서는 안
			제6조제2항	아니	안
			제8조제3항	아니	안
			제9조제1항	소비하여서는 아니	소비해서는 안
			제9조제2항	출장기일	출장날짜
			제13조제2항	달리	다르게
			제15조제1항	때에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없는 한	없으면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지참	지각
21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강당”이라 함은	“강당”이란
			제2조제2항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란
			제2조제3항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란
			제2조제4항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사용자의 설비”란
			제5조제4항	의한	따른
			제5조제4항	의하여	따라
			제5조제5항	동조 제4항제1호의	제4항제1호의
			제7조제1항	의거	따라
			제7조제1항	의한	따른

			제7조제3항	교부하여야	발급하여야
			제7조제4항	반환할 수	돌려줄 수
			제8조제3호	의하여	따라
			제9조제5호	기타	그 밖에
			제10조제3항	사전에	미리
			제11조제1항 제2호	기타	그 밖에
			제11조제1항 제5호	기타	그 밖에
			제11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12조	응하여야	협조하여야
			제13조	관하여	관한
			제1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22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	자를	사람을
			제3조제1항 본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단서	1/2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제3조제2항	당해	해당
			제6조제1호	당해	해당
			제6조제2호	당해	해당
			제6조제5호	당해	해당

			제7조제3항 본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제7조제3항 단서	단축하거나 유예할	줄이거나 미룰
23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	시험수당등
24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영 별표9 --- 각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각 호
			제2조제2호	전임전문직	일반임기제
			제4조	별표9 제18호	별표 9 제8호
			별표1 제목	일반직 의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별표1	의료법 제55조---보사부장관---의료법 제5조	「의료법」 제77조---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제5조
			별표2 제목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25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	대하여	대해서
			제2조제1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3조제2항	대하여	대해서
			제6조제1호	아니한다	않는다
			제6조제3호	아니한다	않는다
			제6조제7호	아니한다	않는다
			제6조제8호	아니한다	않는다
26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제7조	자에 대하여	자에게

		보호 조례			
			제9조	자는	사람은
			제10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27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3조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28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보험 또는 공제등
			제2조제1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제2조제1항	기타전산정보처리조직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
			제2조제2항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제3조제1항	보험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제3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3조제2항	의거	따라
			제5조제1항	발생된	발생한
			제5조제1항	당해	해당
			제6조제2항	비치하고	갖춰 두고
29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의거	따라
			제5조제3항	규정에	규정에도
			제6조제3항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하는 경우 미리
			제7조제6항	유사한	비슷한

			제7조제7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7조제8항	10인	10명
			제7조제9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10조제3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10조제5항	의한	따른
			제10조의2제1항	아니한다	않는다
			제11조제3항	의한	따른
			제14조제2항	의한	따른
			제14조의3 제3항	의하여	따른
			제14조의3 제3항	통보하고 사전에	알리고 미리
			제16조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기타	그 밖에
			제17조제1항	25인, 3인	25명, 3명
			제17조제6항	새로이	새로
			제19조제1항	1인	1명
			제20조제1항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촉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4호나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해촉된 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20조제1항 제5호	기타	그 밖에
			제21조제4항	아니한다	않는다
			제22조	비치하여야 한다	갖춰 두어야 한다
30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제3조제1호	30내지 100세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제4조제2항	통보하여야	알려야
			제5조제2항 제3호	2회에 한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제3항	2회에 한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제5조제3항 제5호	불참하는	참가하지 아니하는
			제5조제6항	규칙이	규칙에서
			제5조제7항	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제6조제2항	자로	사람으로
			제6조제2항	추천에 의하여	추천에 따라
			제9조제1항	비치하여	갖춰 두어
			제9조제2항	통보하는	알리는
			제9조제3항	통보하여야	알려야
			제12조제1항	지득 한	알게 된
			제12조제2항	아니된다	안 된다

31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	근속	계속 근무
			제2조제1항	자의	사람의
			제2조제1항 제2호	자	사람
			제2조제2항	유사한	비슷한
			제3조	자	사람
			제3조	자를	사람을
			제4조제1항	자를	사람을
			제4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7조제3항	대하여	대해서
			제8조 제1항	각호	각 호
32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	동
33	총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조제1항 제1호, 제3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	의한	따른
			제2조제2항	의한	따른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3조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8호	유사한	비슷한
			제4조제4항	의한	따른
			제6조제1항	대하여는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제9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9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9조제2항	대하여는	대해서는
			제9조제3항	의한	따른
			제10조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하여	대해서
			제12조제2항	대하여는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12조제3항	응하여야	협조하여야
34	총무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3조	강구	마련
			제6조	등에 대하여	등에

			제7조	조례가	조례에서
35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의하여	따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자를	사람을
			제3조제2항 제4호	풍부한자	풍부한 사람
			제3조제2항 제4호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의거	따라
			제10조	의한	따른
			제12조	1인	1명
			제13조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36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의한	따른
			제2조제2호	의한	따른
			제2조제3호	의한	따른
			제5조제6항	자로	사람으로
			제11조제3항	의한	따른
			제12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37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3조제1항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자로	사람으로
			제3조제2항 제12호	남동구인 자	남동구인 사람
			제3조제2항 제12호	위촉하는 자	위촉하는 사람
38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의한	따른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1인을 포함한 30인	1명을 포함한 30명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자	사람
			제3조제1항 제2호나목	자	사람
			제6조제1항	1인	1명
39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보도"라 함은	"보도"란
			제2조제2호	"이면도로"라 함은	"이면도로"란
			제2조제2호	의한	따른
			제2조제3호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전용도로"란
			제2조제4호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란
			제2조제5호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제2조제6호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제2조제7호	"아치판넬"이라 함은	"아치판넬"이란

			제2조제8호	"제설·제빙"이라 함은	"제설·제빙"이란
40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1인	1명
			제4조제2항	자로서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	대표 힝 행정동별	대표, 행정동별
			제10조제5항	1인	1명
			제15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16조제3항	의하여	따라
41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의한	따른
42	안전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자를	사람을
			제5조제4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10인 이상 20인	10명 이상 20명
			제5조제4항 제3호	자	사람
			제9조제3항	자는	사람은
			제12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43	문화관광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제2호	장애등급 3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4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따른다.
			제28조제3항	지체 없이	14일 이내에
			제32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45	재무과	인천광역시 남	제1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	결산검사위원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이라 한다)	
			제2조	위원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46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제1항 제2호	의한	따른
			제10조제2항	등에 관하여는	등은
			제12조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제12조	감면함에 있어	감면 할 때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2항	의하여	따라
47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	부과·징수에 관하여	부과·징수는
			제3조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48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제2조	부과·징수에 관하여	부과·징수는
			제3조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은
49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징수 사무 등은
			제3조제2항	요건과 기타	요건과 그 밖에
			제13조제1항 제3호	기타	그 밖에
50	세 무 과	인천광역시 남	제2조제1호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란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성실납세자"라 함은	"성실납세자"란
			제2조제3호	"전자납세자"라 함은	"전자납세자"란
			제2조제4호	"유공납세자"라 함은	"유공납세자"란
			제2조제4호	자를	사람을
			제5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7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51	세 입 징 수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1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2조제3항	특별공적이라 함은	특별공적이란
			제2조제3항	의한	따른
			제2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3조제1항	의한다	따른다
			제3조제1항 제4호 단서	의한	따른
			제3조제1항 제5호 단서	의하여	따라
			제3조제1항 제5호 단서	의한	따른
			제3조제2항	자에게도	사람에게도
			제3조의2제1호	의한	따른
			제6조제2항	자는	사람은
			제7조제3항	의한	따른

			제7조제3항	의하여	따라
			제8조제1항	기타	그 밖에
			제8조제2항	의하여	따라
52	세입징수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	1인	1명
			제5조제1항 단서조항	본적	등록기준지
			제5조제2항	1인	1명
			제5조제3항	제증명 등에 있어	제증명 등에서
			제6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8조제1항	자가	사람이
			제8조제1항 제10호	수수료에 있어서	수수료에서
			제8조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서
53	세입징수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제2항	의한	따른
54	일자리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1인을 포함한 25인	1명을 포함한 25명
			제4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자	사람
			제4조제3항 제1호	자	사람
			제4조제3항 제2호	자	사람
			제4조제3항 제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남동구의회
			제4조제3항	자	사람

			제4호		
			제4조제3항 제5호	자	사람
			제4조제3항 제7호	자	사람
			제8조제4항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의결을 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자	사람
			제15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16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55	일자리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56	일자리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청년들에 대하여	청년들에게
			제7조제1항	운영함에 있어	운영할 때
57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관하여는	관한
			제6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대해서는	대해서
58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59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실조사"라 함은	"사실조사"란
			제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체에게	단체에
60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61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제2조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이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당해	해당
62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6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63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의한	따른
64	생 활 경 제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상인”이라 함은	“상인”이란
			제2조제2호	“점포”라 함은	“점포”란
			제2조제3호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시장”이란
			제2조제3호	구청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상점가”라 함은	“상점가”란
			제2조제5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라 한다) 이란
			제2조제5호	시・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제2조제6호	“편의시설”이라 함은	“편의시설”이란
			제2조제7호	“상인회”라 함은	“상인회”란
			제2조제8호	"시장관리자”라 함은	"시장관리자”란
			제3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4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4조제3항	중소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5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의한다	따른다

			제7조제2항	의한	따른
			제10조제2항	의한	따른
			제18조제1호	허위, 기타	거짓, 그 밖에
			제22조	의한	따른
			제22조	50%	50 퍼센트
			제24조제1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24조제1항	의하며	따르며
			제2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재27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31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31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32조제1항	의한	따른
			제32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32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각 호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3조제1항 제3호	의하여	따라
			제3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의하여	따라
			제3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의한	따른

			제36조제1항	의한	따른
			제40조	의한	따른
			제42조제1항	재래시장	전통시장
			제42조제2항	재래시장	전통시장
			제45조제2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삭제>
			제46조	재래시장	전통시장
			제47조	의하여	따라
			제52조	의하여	따라
			제5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5	농 축 수 산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유기·유실동물˝이라 함은	˝유기·유실동물˝이란
			제2조제2호	˝보호조치˝라 함은	˝보호조치˝란
			제2조제3호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동물보호센터˝(이하 ˝보센터˝라 한다)란
			제2조제3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제2조제4호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병원˝이란
			제2조제5호	˝민간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이란
			제6조제3호	기타	그 밖에
66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	제1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행위신고 포상 조례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7호	기타	그 밖에
			제4조	의하여	따라
			제6조제1항 제3호	기타	그 밖에
			제6조제1항 제4호	대하여	대해서
			제6조제1항 제5호	의하여	따라
			제6조제1항 제9호	허위	거짓
			제6조제3항	대하여	대해서
			제6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기타	그 밖에
			제6조제4항 제1호	대하여---1만원 상당의	대해서---1만원에 해당하는
			제6조제4항 제2호	경우에는---5,000원 상당---1만원 상당의	경우---5,000원---1만원에 해당하는
			제10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67	환 경 보 전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2조제1호	“가축”이라 함은	“가축”이란
			제2조제2호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분뇨”란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법

				이용에 관한 법률」	
68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의한	따른
			제4조	이용자	이용하는 사람
			제6조제2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8조	이용자	이용하는 사람
			제10조	의한	따른
			제13조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17조제1호	의한	따른
69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이란
			제2조제2호	"구매지침”이라 함은	"구매지침”이란
			제2조제3호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구매이행계획”이란
			제2조제4호	“구매실적”이라 함은	“구매실적”이란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당해	해당
			제1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70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호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이라 함은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이란
			제3조제2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제7조	당해	해당
			제9조제3항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제9조제4항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제13조제4항	사무국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제15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20조제1항	의하여	따라
			제19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23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71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2조제1호	“분뇨”라 함은	“분뇨”란
			제2조제2호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분뇨수집·운반업자”란
			제2조제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72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가입자"라 함은	"가입자"란
			제2조제2호	"참여업소"라 함은	"참여업소"란
			제2조제3호	"효도카드"라 함은	"효도카드"란
			제2조제3호	자임을	사람임을
			제5조제3항	전면	앞면
73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학대하여 서는	학대해서는
			제5조제2항	유관기관	관계 기관
			제9조	종사하는 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사하는 사람---해서는 아니 된다
74	노인	인천광역시 남	제2조제1호	의한	따른

	장애인과	동구 저소득노인 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자	사람
			제4조제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조에 따른
75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자로	사람으로
			제8조	조례가	조례로
			제8조	관계법령	관계 법령
76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의하여---관하여 필요한	따라---필요한
			제3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이란
			제7조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함에 있어	할 경우
			제7조제5항 단서	의하여	따라
			제8조제5항	의한	따른
			제11조	범위내에서---직원에 대하여는	범위에서---직원에게는
			제1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77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6조제1항 제11호	기타	그 밖에
78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3조	우선구매에 있어	우선구매시
			제7조제2항	방법에 관하여는	방법은
			제8조제2항	기타 구로부터	구로부터
			제10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79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	등에 대하여---범위 안에서	등에게---범위에서
			제13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18조제2항	기타---범위 안에서	그 밖의---범위에서
			제18조제3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23조	등에 대하여	등에게
			제24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80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이란
			제2조제1호	의한---의한	따른---따른
			제2조제2호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의한---의한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따른---따른
			제2조제3호	"식품비"라 함은	"식품비"란
			제2조제4호	"식재료"라 함은	"식재료"란
			제3조	의한---의한---의한	따른---따른---따른
			제4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의하여	따라
			제6조제6호	기타	그 밖에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15인---각 호의 자---자로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명---15명---각 호의 사람---사람으로
			제7조제2항 제6호, 제7호	자	사람
			제7조제2항 제8호	기타---관련분야에 관하여---자	그 밖에---관련분야에 ---사람
			제7조제7항	기타---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운영에

			제9조제5항	기타	그 밖에
			제10조제2항 제3호	기타	그 밖에
			제1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1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제2조제1항	당해---3%---범위내에서	해당---3 퍼센트---범위에서
			제2조제3항	의한---기타---의한	따른---그 밖에---따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자---구---1/3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사람---남동구(이하 "구"라 한다)---3 분의 1
			제5조제1항 제4호	학교교육에 관하여	학교교육에
			제5조제1항 제5호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교육에
			제5조제4항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9조제2항	사안에 대하여는	사안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제12조제2항	결정함에 있어서---범위 내에서	결정할 때---범위에서
			제13조제1항 제4호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은
			제15조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1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82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8조제2항	기타	그 밖에
			제27조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은
			제29조 1항	의한	따른
			제31조제1항	처리에 있어	처리할 경우
			제31조제3항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사할 경우
			제33조제1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제33조제2항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33조3항	의한	따라
			제34조제3호	진흥에 관하여	진흥에
			제36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39조제1항	직원에 대하여	직원에게
83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전반에 대하여	전반을
			제8조1항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의
			제8조2항	작은도서관에 대한---교부 등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의---교부는
84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관리주체" 라 함은	"관리주체" 란
			제2조제2호	"공동전기료" 라 함은	"공동전기료" 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제4조제2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5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5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실시함에 있어	실시하는 데에
			제14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15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6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자	사람
			제3조제3항	자가	사람이
			제3조제4항	자의	사람의
			제5조제1호	자와	사람과
			제6조제1항	자가---의하여	사람이---따라
			제6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7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8조제3항	의한다	따른다
			제10조제1항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신청이
			제12조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제13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7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당해	해당
			제6조	의한다	따른다
			제8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8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사항에 관하여	사항을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자로	사람으로
			제9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심의한 사항을
			제10조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1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89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5조	의한	따른
			제7조제2항	의하여	따라
			제8조제1항 제7호	1~3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0조	허위사실---사람에 대해서는	거짓---사람에게는
90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91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삭제>
			제4조제4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삭제>
			제4조제5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표지판
			제10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92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사람에 대하여---2회에	사람에게---두 차례에
			제5조	해당한다)에 대하여	해당한다)에게

			제7조제1항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93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기타	그 밖의
			제5조제1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2항제3호	자	사람
			제8조2항제5호	자	사람
			제10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94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역보건법」 제9조, 「치매관리법」 제3조---치매센터	「치매관리법」 제3조---치매안심센터
			제2조	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95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96	남동다문화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자로	사람으로
			제2조제1호 나목	자와---자로	사람과---사람으로
			제2조제2호 각 목 이외의 부분	자를	사람을
			제2조제2호 나목	자	사람
			제5조제3항	의한	따른
			제5조의2제3항	의한	따른
			제20조제1항 제2호	의한	따른
			제24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97	남동다문화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5조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	(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자	사람
			제6조제3항 제1호	인천남동경찰서	관할 경찰서
			제6조제3항 제2호	자-----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사람-----남동구의회 의원
			제14조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17조제3항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제20조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정비 (제2조)

○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 (제3조)

규 칙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0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1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규칙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강료 감면 : 1 ~ 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장료 감면 :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자”라 함은”을 ““직무관련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을 ““직무관련공무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

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로, "상담한 후 처리"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2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유형 보완, 갑질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상담해야하는 유형 규정, 행동강령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보완(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규정 신설(제13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신설(제14조의4)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규정 보완(제18조제1항)

○ 행동강령 교육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및 교육 내용 구체화 (제22조제1항, 제3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10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로 한다”를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제3조제3항제4호 중 “동부교육지원청”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남동경찰서”를 “인천남동경찰서 또는 인천논현경찰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남동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3조제3항제8호 중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인천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3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천보호관찰소장

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의될”을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상위법을 인용함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제3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수당지급기준 명문화 (제10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 개정이유

○ 의원발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등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06.13)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06월 28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100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남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제63조제1항"**을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찬성의원 을"을 "찬성의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취 지・주요내용・전문"을 "취지・주요내용・전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사무국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6월 28일

남동구의회 훈령 제36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 등" 이란 진정인이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2. “진정인 등” 이란 의회에 진정서 등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서 등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불수리사항) ①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 외의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진정서 등
7. 그 밖에 의장이 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진정인 등(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또는 및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진정서 등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보고된 진정서 등을 진정서 등 요지서와 함께 소관 위원회(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회부한다. 다만, 진정서 등의 내용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완결한다.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정서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진정서 등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나 서류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정서 등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처리기한) 진정서 등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등이 처리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활용)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구청장에게 이송한 진정서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등 접수처리부

0000년도

연번	진정번호	건명	진정인		접수일	소관위원회	위원회		집행부회신접수일	민원회시	결과	비고
			주소	성명			회부일	검토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 서식]

진 정 서 등 요 지 서

접 수 일		진정번호	
주 소			
성 명			
건 명			

《진정요지》

[별지 제3호 서식]

진정서 등 접수증 발급 원부

일련번호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상기와 같이 진정서 등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인)

진 정 서 등 접 수 증

일련번호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상기와 같이 진정서 등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진정서 등 검토보고서

건 명		진정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진 정 요 지			
진 정 조 사 내 용			
처 리 계 획			
특 기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진정서 등 처리결과

건 명		진정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접 수 일		회 부 일	
검 토 일		전문위원	
진정요지			
진정서 등 처리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진정서 처리주체 및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진정서 처리와 불수리 사항 명확화 (안 제3조 및 제4조)

○ 진정서 처리 방법(주체)을 규정하는 사항 (안 제5조)

○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내실 있는 진정서 처리를 위한 처리기한 변경(의정활동 기간 등을 제외하고 7일 이내 →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훈 령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6월 28일

남동구의회 훈령 제3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16조 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 중 “상이할”을 “서로 다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1,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제3조(전결방법) ① ---------- 별표 1---------- 별표 2에 따라 ----------.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② ------ 따라 해당 ----------.

전결할 수 있다.	
③ 의장 및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 대해서----------
제4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합의) ---------- 서로 다를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따라 ----------.

[별표 2]

□ 사무국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부 서 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국장
		담당자		전문위원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1. 주요업무계획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기안			○
	다. 자료수집	기안			○
	2.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협의	기안			○
	3. 접수문서의 공람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5.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조회,회람	기안			○
	6.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가. 중요사항 보고	기안			○
	나.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보고	기안			○
	7.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8. 관내 및 관외출장				
	가. 지방4급 이상	기안			○
	나. 지방5급 이하	기안			○
	9. 해외출장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				

부 서 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국장
		담당자		전문위원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가. 지방4급 이상	기안			○
	나. 지방5급 이하	기안			○
	10.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 등의 허가				
	가. 지방4급 이상	기안			○
	나. 지방5급 이하	기안			○
	11. 사무분장 조정				
	가. 새로운 기능	기안			○
	나. 실간 사무조정	기안			○
	다. 소속부서의 사무분장	기안			○
	12. 사무인계·인수				
	가. 지방4급간	기안			○
의 정 팀	1. 사무국 직원 인사관리				
	가. 5급이하 공무원 보직부여	기안			○
	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	기안			○
	라. 근무성적평정	기안			○
	2. 교육훈련				
	가. 피교육자 수요조사	기안	○		
	나. 피교육자 선정				
	1) 지방5급 이상	기안			○
	2) 지방6급 이하	기안			○
	3. 각종포상 추천	기안			○
	4. 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기안			○
	5. 조직 및 정원관리	기안			○
	6.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기안	○		
	7. 보안업무				
	가. 사무국 직원 비밀취급인가 요청	기안			○
	8. 직장 방호계획 수립	기안			○
	9. 직장교육	기안			○
	10. 간부회의 운영	기안			○
	1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기안			○

부 서 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국장
		담당자		전문위원	
		실무급	담당급		
의 정 팀	12. 직원 후생시설 관리	기안	○		
	13. 공문서 관리				
	가. 공문서 수발	기안	○		
	나. 공문서 보존	기안	○		
	다. 폐기문서 처리	기안	○		
	14. 관인관리	기안	○		
	15.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기안			○
	16. 심사분석 결과보고	기안			○
	17. 목표관리지침 시달	기안			○
	18. 목표관리제 결과보고	기안			○
	19. 사무국관련 진정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사항	기안			○
	20. 지출서류 심사	기안	○		
	21.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기안	○		
	22. 물품검수 입회확인	기안	○		
	23. 회계관련 법규정비				
	가. 회계 및 예산집행 관련 질의 응답	기안	○		
	나. 회계에 관한 지침 및 지시	기안	○		
	24. 지출원인행위	기안			○
	25. 지출	기안	○		
	26. 분기별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기안			○
	27. 자금신청	○			
	2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기안	○		
	29. 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출납	○			

부 서 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국장
		담당자		전문위원	
		실무급	담당급		
의 정 팀	30. 봉급총괄	기안			○
	31. 의원수당 지급	기안			○
	32.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안			○
	33.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재물현황 조사	기안			○
	다. 물품소요 조회 및 관리전환	기안			○
	라. 불용물품 결정 및 매각	기안			○
	마.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고관리	기안			○
	34. 차량관리				
	가. 일일배차 명령 및 유류지급	기안	○		
	나.차량연료 구입	기안			○
	다. 차량등록 및 검사수속	기안			○
	라. 차량불용결정 및 교체	기안			○
	마. 차량정비 및 용품 구매	기안			○
	바. 차량운행일지 점검확인	기안	○		
	35.시설관리				
	가. 기계·전기·통신설비 관리·유지	기안			○
	나. 방송·음향시설 유지관리	기안			○
	다. 의회청사 관리·유지 및 보수	기안			○
	36. 의회자료실 운영				
	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서열람 및 대출	○			
	다. 도서 및 신문제본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도서구입	기안			○
	마. 기증자료의 수집	기안	○		
	바. 도서의 장서점검 및 보존	기안	○		
	사. 도서의 전산관리 및 운영	기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규정의 운영상 관련 상위법령명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으로 정함(제명)

○ 상위법령명 개정(안 제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훈 령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6월 28일

남동구의회 훈령 제3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3조 중 “감사장,상장”을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제5호서식에”를 “별지 제5호서식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을 각각 “남동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을 각각 “남동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표창규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남동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 남동구의회 ----------.
제 3 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 감사장, 상장----------.
제4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부터----------. ② 제1항에 따른 ----------.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3. (생 략)	제7조(표창장)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국장 및 구청장등 각급 기관장이 한다. ② (생 략)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 사무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6월 28일

남동구 훈령 제3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단”을 “·담당관”으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실·단 ·과 및 산하기관별 정원)”을 “(실·담당관·과 및 산하기관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동구 본청에 두는 실·담당관·과별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무 과	계		29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4	
		2급	1	지방이사관1
		4급	1	지방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9	행정8, 전산1
		8급	6	행정6
		9급	1	행정1
	별정직	소계	4	
		5급	1	비서실장1
		6급	1	비서요원1
		7급	1	비서요원1
		8급	1	비서요원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남동구 공무원(별정직) 정원관리의 신축성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도모를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별정직)의 직급별 내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1] 구본청 실·담당관·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 총무과 별정직 직급별 내역 조정(문구 삭제)

구분	직종	직급	정원	현행 내역	개정 내역	비고
총무과	별정직	소계	4			
		5급	1	비서실장1	비서실장1	변동없음
		6급	1	비서요원(수행)1	비서요원1	괄호문구삭제
		7급	1	비서요원(기사)1	비서요원1	괄호문구삭제
		8급	1	비서요원(비서)1	비서요원1	괄호문구삭제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19-1169 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4.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6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소통협력담당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60, FAX 453-29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6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 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으로 구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공공갈등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정책의 가치추구)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에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거나 제17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주관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2. 해당 공공갈등민원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3.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2명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당연 해산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밖에 협의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및 제17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구청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6.1.22>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 ·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 · 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정책 · 법령 · 제도 · 문화 등의 조사 · 연구
2. 갈등의 예방 · 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 · 보급
3.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 · 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 · 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 ·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 · 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 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 ·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 · 연구 · 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6928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9-1191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9. 6. 26.

남 동 구 청 장

1. 공시기준일: 2019년 1월 1일
2. 공시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8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9-4번지
3.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가격, 면적
4.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남동구청 세무과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1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 허가에 있어 입지와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항에 따른 동식물관련시설의 추가적인 건축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 분할 기준을 정함
   ○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설치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73, FAX 453-29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1, 제22조 및 별표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25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 허가에 있어서 입지와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항에 따른 동식물관련시설의 추가적인 건축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 분할 기준을 정함

○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설치의 기준을 정함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1, 제22조 및 별표2
○ 건축물의 구조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거주중인 개발제한구역내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닐 것.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다만, 축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함.
5.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가분할 후 제3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허가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3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4미터 이하, 지반고 50센티미터 이하 성토만 가능하며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3. 작물 재배사,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형식의 강파이프조로만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허가받은 용도로써 사용 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2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추가적인 건축)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 가항에 따른 동식물관련시설을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추가적인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작물재배사・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종전 행위허가 처리방식에 따른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5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참고자료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참고자료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2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5. 21.>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군·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4]

건축물의 구조 예시

경량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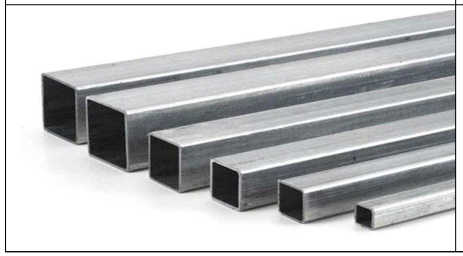

형강의 두께가 6mm이하의 각관 및 강관을 주구조체로 사용하는 구조로 기둥과 기둥사이 넓이에 제한이 있어 계획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에 주로 이용됨

일반철골조

형강의 두께가 6mm이상의 H형강(통칭 H빔)을 주구조체로 사용하는 구조로 기둥과 기둥사이를 넓게 계획 가능하여 상당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주로 이용됨

강파이프조

	파이프를 주구조체로 사용하는 구조로 비닐하우스, 천막 등의 건축에 사용

[참고자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개발제한구역법」 (약칭)에서 정한 구 조례 제정 - 별표1 제5호 : 작물재배사 등의 시설 종류, 규모, 구조, 입지기준 - 별표2 제1호 : 토지의 분할 - 별표2 제3호 : 동식물 관련시설·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조경면적	o 「개발제한구역법」 (약칭)에서 정한 구 조례 제정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해당 토지의 소유자일 것 ② 00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제5호다) 라)의 단서에 따라 00구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라)에 규정된 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 제정 o 제2조 제1항 1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광주시·남양주·시흥시>** • 본인 소유·거주주택 동일 市(지방자치단체) 지역 **<경기도 과천시·광주시>** • 주택 소유 및 3년이상 거주 **<경기도 시흥시>** • 주택소유 및 현재 거주 o 제2조 제1항 1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광주시·남양주·시흥시>** • 해당 토지의 소유자 o 제2조 제1항 3·4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 • 농·축산업 3년이상 종사 • 농지 2천 제곱미터 소유 **<경기도 시흥시>** • 농·축산업 2년이상 종사 **<경기도 남양주>** • 현재 농림업 등 종사자	o건축자격은 조례 미 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2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거주 중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닐 것.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다만, 축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함. 5.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가분할 후 제3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허가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에 있을 것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닐 것.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신축가능함.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가능함.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다만, 축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함.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제3조 1~4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 • 1호 : 주택소유·동일 시(구) • 2~4호 : 내용 동일 <경기도 광주시> • 1호 : 내용 동일 • 2, 4호 : 내용 동일 <경기도 구리시> • 1호 : 현재거주 • 2호 : 지목상 임야 불가 • 20m이상 도로 에서 100m이상 이격 (또는 건축물 2/3이상 인보일 경우) • 4호 : 축사 주거지 100m 이상 이격 (공동주택·학교 200m이상이격) <경기도 남양주> • 1호 : 주택소유·동일 시(구) • 2호 : 지목상 임야 불가 <경기도 수원시> • 우량농지 및 지목 상 임야 불가 •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등 200m이상 이격 (공동주택·학교 300m이상이격) <경기도 시흥시> • 소유주택 500m 이내 소유토지 • 우량농지 및 지목 상 임야 불가 • 고속·일반국도 200m이상 이격 • 시도(소로2류이상) 100m이상 이격 •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취락지구와 100m이상 이격 (공동주택·학교 300m이상이격) • 공사업에 따른 이격은 규정 미적용 <경기도 수원시> • 우량농지 및 지목 상 임야 불가 •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주거지역·취락지구 등 가축별 50m ~ 1,000m이상 이격 (공동주택·학교 300m이상이격) o 제3조 5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고양시> •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가분할 하여 제3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금지.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참조하여 200m 이내 제한 o 경기도 고양시는 고시 사항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3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3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4미터 이하, 지반고 50센티미터 이하 성토 만 가능하며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3. 작물 재배사,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형식의 강파이프조로만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허가받은 용도로써 사용 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2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00미터(3 ~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00미터(4 ~ 5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3.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일 것.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제4조 1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 • 처마높이 : 4m <경기도 광주시·시흥시> • 처마높이 : 4m • 건축물높이 : 5m <경기도 수원시> • 처마높이 : 4m • 건축물높이 : 5.5m <경기도 의정부> • 처마높이 : 3m • 건축물높이 : 4m <경기도 고양시> • 처마높이 : 시설별 2.5~3m • 건축물높이 : 시설별 4~4.5m • 바닥높이 : 시설별 GL +200~250㎜ o 제4조 2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구리시> • 축사 벽체높이 1.2m 이하 o 제4조 3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남양주·수원시·시흥시·의정부> •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경기도 광주시> •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철파이프조 <경기도 고양시> • 가설건축물, 1년미만 연장 • 경량철골조 o 제4조 3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수원시·시흥시·의정부시> •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설비 완비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4조(추가적인 건축)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 가항에 따른 동식물관련시설을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추가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제5조 2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까지 사용기간 <경기도 광주시·수원시> • 입지기준 적합 <경기도 의정부> • 입지기준·구조기준 적합 o 제5조 2호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 추가가능 시설물 종류 <경기도 광주시> • 내용동일 <경기도 과천시·남양주·수원시> • 축사·사육장·작물재배사 <경기도 구리시> • 축사·사육장·작물재배사 육묘·종묘배양장·온실 <경기도 의정부> • 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축사 -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까지 사용기간 <경기도 광주시·구리시·수원시> • 신청일 현재 2년이상 • 구리시 1가구 1개시설만 건축가능 <경기도 과천시> • 신청일 현재 3년이상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5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 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 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 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 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 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 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제6조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 • 별표 허가기준 내용동일 <경기도 시흥시> • 시행령 제16조에 따름 • 개발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금지 • 1년이내 재분할 금지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제호 차에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개발제한구역법」(약칭)에서 정한 구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구 조례 제정(안)	市 조례 표준 제정(안)	타 시·군·구 비교	비 고
제8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작물재배사·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판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종전 행위허가 처리방식에 따른다.	제7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작물재배사·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판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o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제정 o 제7조와 관련 타 시·군·구 사례 **<경기도 과천시>** • 내용동일	o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8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시 조경면적 확보비율 제정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120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6.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06.27.~2019.07.11.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3대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19-0029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24. ○ 견인일 : 2019.07.11.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510-6 싱싱회집 앞 인도
	2019-0029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24. ○ 견인일 : 2019.07.11.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14 CU편의점 앞 전봇대
	2019-0030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24. ○ 견인일 : 2019.07.11.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회관역 5번 출구쪽 인도(인천지방경찰청 서문 위 / 예술회관역 버스정류장 위)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29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동 510-6 싱싱회집 앞 인도	2019.07.11. 이후	견인예정	
2	2019-0029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석산로197번길 14 CU편의점 앞 전봇대	2019.07.11. 이후	견인예정	
3	2019-0030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예술회관역 5번 출구쪽 인도(인천지방경찰청 서문 위 / 예술회관역 버스정류장 위)	2019.07.11. 이후	견인예정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1205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6.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6.27.~2019.07.11.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1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리번호		
	2019-0030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6.27. ○ 견인일 : 2019.07.11.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간석고가교 하부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30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오거리 간석고가교 하부	2019.07.11.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207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업자(체)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19.06.28.(금) ~ 2019.07.16.(화) (18일간)
5. 청문일 및 청문장소 : 2019.07.16.(화) 18:00까지 남동구청 6층 문화관광체육과
   (※ 의견제출 기한 : 2019.07.16. 까지)
6. 위반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예정처분)
1	일반 게임제공업 (2016-2)	시장 게임랜드	장 O 정	인천 남동구 용천로168번길 9, 2층호 (간석동)	사행행위(환전) (2019.05.30. 17:00경)	허가취소

7. 허가취소 예정일 : 2019.07.17.(수)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2019. 06.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허가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410 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신조(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8.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남동구 공인조례 개정(공인 전면 개각에 따른 기존 공인 폐기)

❍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19. 7. 1.

❍ 신조(폐기) 공인 수 : 50개

❍ 신조(폐기) 공인내역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1	신 조 공 인	남동구청장인	남동구 청장인	고인체 3.0㎝×3.0㎝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2	신 조 공 인	남동구보건소장인	남동구보 건소장인	고인체 2.4㎝×2.4㎝
3	신 조 공 인	남동구간석건강관리센터장인	남동구간석 건강관리 센터장인	고인체 2.4㎝×2.4㎝
4	신 조 공 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인	남동공단 지원사업 소장인	고인체 2.4㎝×2.4㎝
5	신 조 공 인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인	남동다문화 사업소장인	고인체 2.4㎝×2.4㎝
6	신 조 공 인	구월1동장인	구월1 동장인	고인체 2.4㎝×2.4㎝

- 2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7	신 조 공 인	구월2동장인	구월2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8	신 조 공 인	구월3동장인	구월3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9	신 조 공 인	구월4동장인	구월4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0	신 조 공 인	간석1동장인	간석1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1	신 조 공 인	간석2동장인	간석2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2	신 조 공 인	간석3동장인	간석3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 3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13	신 조 공 인	간석4동장인	간석4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4	신 조 공 인	만수1동장인	만수1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5	신 조 공 인	만수2동장인	만수2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6	신 조 공 인	만수3동장인	만수3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7	신 조 공 인	만수4동장인	만수4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18	신 조 공 인	만수5동장인	만수5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 4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19	신 조 공 인	만수6동장인	만수6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0	신 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1	신 조 공 인	서창2동장인	서창2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2	신 조 공 인	남촌도림동장인	남촌도림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3	신 조 공 인	논현1동장인	논현1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4	신 조 공 인	논현2동장인	논현2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 5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25	신 조 공 인	논현고잔동장인	논현고잔 동장인	고인체 2.4cm×2.4cm
26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인체 2.4cm×2.4cm
27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고인체 2.1cm×2.1cm
28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건강관리센터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건강관리센터장	고인체 2.1cm×2.1cm
29	폐 기 공 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인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고인체 2.1cm×2.1cm
30	폐 기 공 인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인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인체 2.1cm×2.1cm

- 6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31	폐 기 공 인	구월1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2	폐 기 공 인	구월2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3	폐 기 공 인	구월3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4	폐 기 공 인	구월4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5	폐 기 공 인	간석1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6	폐 기 공 인	간석2동장인		고인체 2.1cm×2.1cm

- 7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37	폐 기 공 인	간석3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8	폐 기 공 인	간석4동장인		고인체 2.1cm×2.1cm
39	폐 기 공 인	만수1동장인		고인체 2.1cm×2.1cm
40	폐 기 공 인	만수2동장인		고인체 2.1cm×2.1cm
41	폐 기 공 인	만수3동장인		고인체 2.1cm×2.1cm
42	폐 기 공 인	만수4동장인		고인체 2.1cm×2.1cm

- 8 -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43	폐 기 공 인	만수5동장인		고인체 2.1㎝×2.1㎝
44	폐 기 공 인	만수6동장인		고인체 2.1㎝×2.1㎝
45	폐 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고인체 2.1㎝×2.1㎝
46	폐 기 공 인	서창2동장인		고인체 2.1㎝×2.1㎝
47	폐 기 공 인	남촌도림동장인		고인체 2.1㎝×2.1㎝
48	폐 기 공 인	논현1동장인		고인체 2.1㎝×2.1㎝

제 호

남동구 구보

연 번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49	폐 기 공 인	논현2동장인		고인체 2.1㎝×2.1㎝
50	폐 기 공 인	논현고잔동장인		고인체 2.1㎝×2.1㎝

공 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일
발 의 자 : 오용환,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4, 안 제17조의 2)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5, 안 제17조의 3)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모자보건법」 제2조, 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별표1
○ 「주차장법」제6조, 제14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6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제6호 중 "자동차 "를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을 "두 자녀는 30퍼센트 감면, 세 자녀 이상은 50퍼센트 감면("으로,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 50퍼센트 감면"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④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르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⑨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7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

의4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6.----------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 50퍼센트 감면	9. ---------- 두 자녀는 30퍼센트 감면, 세 자녀 이상은 50퍼센트 감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④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⑥ 제5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르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⑨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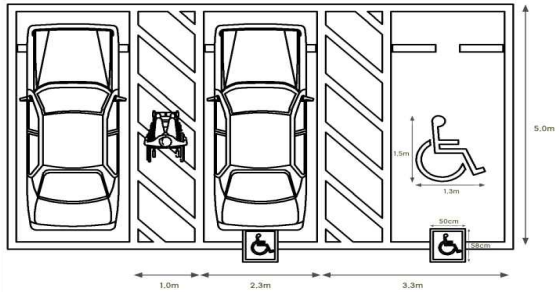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07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4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근로자 권익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6조)
-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28. ~ 7. 3.(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① 구청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 (인)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략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 - 108호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28 ~ 7. 3.(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남동구 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청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남동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 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체육시설 종사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밖에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실태조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임애숙(인)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12. (생략)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5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7. 10.
3. 처 분 근 거 법 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19. 6. 25. ~ 2019. 7. 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9-0199642	프리즌 코리아	문O식	구월로 135, 1층일부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0-06-30	2019-07-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0199002	㈜수서팜	황O태	예술로258번길 5, 덕산상가 A동 112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1-15	2019-07-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0199377	㈜코아 뉴트리션	김O귀	능허대로741번길 15 (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09-09-30	2019-07-10

6. 고 지 사 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2019. 7. 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6.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5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7. 10.
3. 처 분 근 거 법 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19. 6. 25. ~ 2019. 7. 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199130	성광유통	이**	백범로214번길 6-2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17.03.24	2019-07-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199284	리치몰	박**	담방로 22-16, 102동 802호 (만수동, 금호아파트)		17.03.08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200225	금사단인천	김**	인주대로676번길 19, 1동 607호 (구월동, 동남아파트)		17.08.25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60199377	원(one)웰빙	정**	문화서로62번길 7, 1층 101호 (구월동, 이안빌리지)		17.12.0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50199123	디어마마구월점	이**	인주대로 588, 5층 (구월동, 대암빌딩)		15.04.29	

6. 고 지 사 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2019. 7. 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19. 06.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5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7. 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6. 27. ~ 2019. 07.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기타식품 판매업	2017-0200037	부강식자재마트	이O예	염전로 407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26	2019-07-1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7. 1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06.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7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2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2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2 (고잔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6-20 (만수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6-18 (만수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8 (간석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6-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0 (간석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37-1 (운연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37-9 (운연동)	2019.6.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2 (고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 20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9-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20-16 (만수동)	2009.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29번길 20-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1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6-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0 (간석동)	2009.11.16	벽돌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벽돌말로19번길 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37-7 (운연동)	2009.11.16	용부리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부리안길 37-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7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33 (운연동)	2009.11.16	용부리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부리안길 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31 (운연동)	2009.11.16	용부리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부리안길 3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1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5-5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역서로 7-7 (논현동)	2009.11.16	소래역로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서로 7-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7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56 (만수동)	2009.11.16	옛날에 장군이 숨어있었다는 산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6.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 5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80호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우리 구 2018회계연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결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	㉰/㉮	세출 ㉱	㉱/㉮	결산상 잉여금 ㉲=(㉰-㉱)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현 년 도 채무상환 ㉴	순세계 잉여금 ㉵=㉲-㉳-㉴-㉶
								계 ㉶=①+②+③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합 계	860,969,463,740	881,856,585,178	102 %	692,700,439,940	80 %	189,156,145,238	22 %	67,876,782,466 (166,813,950)	15,880,547,960 (154,880,000)	11,542,527,156 (11,933,950)	40,453,707,350	6,383,042,842		114,896,319,930
일 반 회 계	812,997,227,360	833,651,971,851	103 %	669,893,466,770	82 %	163,758,505,081	20 %	63,483,684,416 (166,813,950)	13,754,381,550 (154,880,000)	9,275,595,516 (11,933,950)	40,453,707,350	6,363,168,752		93,911,651,913
특 별 회 계	47,972,236,380	48,204,613,327	100 %	22,806,973,170	48 %	25,397,640,157	53 %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9,874,090		20,984,668,017
기타특별회계	47,972,236,380	48,204,613,327	100 %	22,806,973,170	48 %	25,397,640,157	53 %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9,874,090		20,984,668,017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814,387,980	10,539,756,090	97 %	10,539,756,090	97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635,925,000	10,597,581,644	100 %			10,597,581,644	100 %							10,597,581,6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706,000	81,740,508	101 %	77,687,120	96 %	4,053,388	5 %					3,018,880		1,034,5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6,557,000	1,366,340,632	100 %	1,212,168,943	89 %	154,171,689	11 %					1,855,210		152,316,47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000,000	237,777,790	85 %	51,093,350	18 %	186,684,440	67 %							186,684,440
기반시설특별회계	54,963,000	54,236,887	99 %	54,236,887	99 %									
주차장특별회계	24,740,697,400	25,327,179,776	102 %	10,872,030,780	44 %	14,455,148,996	58 %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5,000,000		10,047,050,946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	㉰/㉰
합 계	795,391,074,000	65,578,389,740	860,969,463,740	950,548,507,368	882,803,638,768	947,053,590	881,856,585,178	3,283,343,503	65,408,578,687	102.4 %	92.8 %
일 반 회 계	754,895,234,000	58,101,993,360	812,997,227,360	874,465,737,266	834,596,788,101	944,816,250	833,651,971,851	3,200,088,453	37,613,676,962	102.5 %	95.3 %
지방세수입	123,187,000,000		123,187,000,000	134,285,302,410	126,133,489,810	303,334,180	125,830,155,630	514,912,720	7,940,234,060	102.1 %	93.7 %
보통세	120,787,000,000		120,787,000,000	126,394,736,550	123,485,528,370	212,908,440	123,272,619,930	55,620	3,122,061,000	102.1 %	97.5 %
지난년도수입	2,400,000,000		2,400,000,000	7,890,565,860	2,647,961,440	90,425,740	2,557,535,700	514,857,100	4,818,173,060	106.6 %	32.4 %
세외수입	48,958,982,000		48,958,982,000	91,689,376,086	59,594,587,981	263,830,530	59,330,757,451	2,685,175,733	29,673,442,902	121.2 %	64.7 %
경상적세외수입	38,769,704,000		38,769,704,000	41,959,462,265	41,834,957,427	33,972,770	41,800,984,657		158,477,608	107.8 %	99.6 %
임시적세외수입	10,189,278,000		10,189,278,000	49,729,913,821	17,759,630,554	229,857,760	17,529,772,794	2,685,175,733	29,514,965,294	172.0 %	35.2 %
지방교부세	10,344,000,000		10,344,000,000	14,619,770,200	14,619,770,200		14,619,770,200			141.3 %	100.0 %
지방교부세	10,344,000,000		10,344,000,000	14,619,770,200	14,619,770,200		14,619,770,200			141.3 %	100.0 %

조정교부금등	87,083,776,000		87,083,776,000	89,977,175,320	89,977,175,320		89,977,175,320			103.3 %	100.0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87,083,776,000		87,083,776,000	89,977,175,320	89,977,175,320		89,977,175,320			103.3 %	100.0 %
보조금	400,177,745,000		400,177,745,000	399,610,054,510	399,987,706,050	377,651,540	399,610,054,510			99.9 %	100.0 %
국고보조금등	282,437,747,000		282,437,747,000	281,959,040,000	282,176,703,800	217,663,800	281,959,040,000			99.8 %	100.0 %
시 · 도비보조금등	117,739,998,000		117,739,998,000	117,651,014,510	117,811,002,250	159,987,740	117,651,014,510			99.9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143,731,000	58,101,993,380	143,245,724,380	144,284,058,740	144,284,058,740		144,284,058,740			100.7 %	100.0 %
보전수입등	74,715,973,000	58,101,993,380	132,817,966,380	134,036,967,843	134,036,967,843		134,036,967,843			100.9 %	100.0 %
내부거래	10,427,758,000		10,427,758,000	10,247,090,897	10,247,090,897		10,247,090,897			98.3 %	100.0 %
특 별 회 계	40,496,640,000	7,476,398,380	47,972,238,380	76,082,770,102	48,206,850,667	2,237,340	48,204,613,327	53,255,050	27,794,901,725	100.5 %	63.4 %
기타특별회계	40,496,640,000	7,476,398,380	47,972,238,380	76,082,770,102	48,206,850,667	2,237,340	48,204,613,327	53,255,050	27,794,901,725	100.5 %	63.4 %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0,749,756,000	64,631,980	10,814,387,980	10,539,756,090	10,539,756,090		10,539,756,090			97.5 %	100.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635,925,000		10,635,925,000	10,597,551,844	10,597,551,844		10,597,551,844			99.6 %	1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706,000		50,706,000	51,740,508	51,740,508		51,740,508			101.5 %	1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6,557,000		1,366,557,000	21,353,551,857	1,366,340,632		1,366,340,632	38,556,220	19,948,624,705	100.0 %	6.4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000,000		279,000,000	254,135,300	237,777,790		237,777,790		16,357,510	85.2 %	93.6 %
기반시설특별회계	54,963,000		54,963,000	54,236,887	54,236,887		54,236,887			98.7 %	100.0 %
주차장특별회계	17,328,993,000	7,411,764,400	24,740,697,400	33,201,765,116	25,329,417,116	2,237,340	25,327,179,776	44,655,830	7,829,919,510	102.4 %	76.3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 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④+⑤ +⑥+⑦+⑧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 절감액 ⑤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⑥	지출잔액 ⑦	예비비 ⑧
합 계	795,391,074,000	65,578,389,740	860,969,463,740	692,700,439,940	68,043,596,416 (166,813,950)	16,035,427,960 (154,880,000)	11,554,461,106 (11,933,950)	40,453,707,350	6,380,492,842	93,844,934,542	2,096,841,776		568,916,542	34,780,762,224	56,398,414,000
일 반 회 계	754,895,234,000	58,101,993,360	812,997,227,360	669,893,466,770	63,650,498,366 (166,813,950)	13,909,261,550 (154,880,000)	9,287,529,466 (11,933,950)	40,453,707,350	6,360,618,752	73,092,643,472	2,076,841,396		549,916,542	20,428,380,534	50,037,505,000
일반공공행정	48,657,522,000	9,330,640,250	57,988,162,250	39,721,834,540	15,049,126,930	503,440,000	128,542,530	14,417,144,400	10,527,780	3,206,673,000	9,340,370		50,028,222	3,147,304,408	
공공질서및안전	5,693,446,000	2,838,624,910	8,532,070,910	6,808,088,620	1,090,003,820	450,000,000	418,241,300	221,762,520	48,784,153	585,194,317	24,621,167		375,700,000	184,873,130	
교육	11,139,461,000	0	11,139,461,000	11,113,066,330					52,900	26,341,770	13,624,250			12,717,520	
문화및관광	10,681,219,000	4,759,297,900	15,440,516,900	10,087,702,800	2,110,534,740		76,959,500	2,033,575,240	13,277,030	3,229,002,330	74,106,400			3,154,895,930	
환경보호	24,185,146,000	1,307,947,220	25,493,093,220	23,173,035,046	503,300,000	500,000,000	3,300,000		76,007,730	1,740,750,444	33,000,400			1,707,750,044	
사회복지	415,642,984,000	212,736,000	415,855,720,000	409,618,327,435	814,353,760	741,261,000	73,092,760		4,190,908,911	1,232,129,894	883,846,447		40,000,000	308,283,447	
보건	17,425,015,000	1,223,648,000	18,648,663,000	16,984,921,260	249,455,550		249,455,550		879,581,310	534,704,880	9,289,280		10,293,000	515,122,600	

농림해양수산	3,754,336,000	113,915,640	3,868,251,640	3,573,570,100	16,000,000	16,000,000			112,004,600	166,676,940	38,843,970		23,296,380	104,536,590	
산업 · 중소기업	3,845,990,000	0	3,845,990,000	3,015,588,165	315,308,950 (166,813,950)	254,775,000 (154,880,000)	60,533,950 (11,933,950)		231,559,173	283,533,712	86,086,757			197,446,955	
수송및교통	17,157,127,000	7,838,636,850	24,995,763,850	16,278,933,600	6,565,953,740	4,638,779,000	1,927,174,740		29,579,785	2,121,296,725	29,579,785			2,091,716,940	
국토및지역개발	57,222,501,000	30,511,481,590	87,733,982,590	46,860,992,200	36,936,460,876	6,805,006,550	6,350,229,136	23,781,225,190	179,469,500	3,757,060,014	617,268,840		10,000,000	3,129,791,174	
예비비	50,072,440,000	△34,935,000	50,037,505,000	0						50,037,505,000					50,037,505,000
기타	89,418,047,000	0	89,418,047,000	82,657,406,674					588,865,880	6,171,774,446	257,233,710		40,598,940	5,873,941,796	
특 별 회 계	40,495,840,000	7,476,396,380	47,972,236,380	22,806,973,170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9,874,090	20,752,291,070	20,000,380		19,000,000	14,352,381,690	6,360,909,000

기타특별회계	40,495,840,000	7,476,396,380	47,972,236,380	22,806,973,170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9,874,090	20,752,291,070	20,000,380		19,000,000	14,352,381,690	6,360,909,000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공공시	10,749,756,000	64,631,980	10,814,387,980	10,539,756,090						274,631,890				274,631,89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635,925,000	0	10,635,925,000	0						10,635,925,000				10,635,925,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706,000	0	80,706,000	77,687,120					3,018,8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6,557,000	0	1,366,557,000	1,212,168,943					1,855,210	152,532,847	5,000,380			147,532,46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9,000,000	0	279,000,000	51,093,350						227,906,650				227,906,650	
기반시설특별회계	54,963,000	0	54,963,000	54,236,887						726,113				726,113	
주차장특별회계	17,328,933,000	7,411,764,400	24,740,697,400	10,872,030,780	4,393,098,050	2,126,166,410	2,266,931,640		15,000,000	9,460,568,570	15,000,000		19,000,000	3,065,659,570	6,360,909,00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9-81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등 변경 및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등 변경 및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주유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주유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소 수량을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재공고 배치노선에 주유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유소 설치 목적의 행위허가 허가 신청 전에 이 고시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농지는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고시에 의한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폐지하고 주유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직선거리 이내는 신청할 수 없다.

자.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나.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재공고 배치노선 주유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재공고 배치노선에 주유소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⑤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첨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⑤ 설치대상자 선정 순위

1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3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⑥ 공람기간 : 2019. 6. 28. ~ 2019. 7. 28. (31일간)

⑦ 접수기간 : 2019. 7. 29. ~ 2019. 8. 2. 18:00까지 (5일간)

⑧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배치계획상 재공고 배치노선은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⑨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주유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설치한 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유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주유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는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주유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주유소 설치대상 선정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득한 후「개발제한구역법」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주유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 이 고시 시행 시 당초 고시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는 모두 폐지한다.

제4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배치노선상의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공고 노선에 위치한 기존 허가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 이 고시에 따른 주유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 배치계획

연번	구분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 간 현 황			연 장	주유소 배치정수	비 고
			구 간	시 점	종 점			
1	당초	남동로 (광2-10)	양측	구월동 846	도림동 625-8	2.3㎞	2	기 허가 완료 (노선 현행화)
	변경	남동대로	동측	남촌동 627-16	구월동 826-2	1.8㎞	1	
			서측	구월동 847	남촌동 625-62	2.3㎞	1	
2	당초	수인산업도로 (대1-14)	남측	장수동 685-1	장수동 산38-1	1.6㎞	1	
	변경	백범로-수인로	남측	만수동 590-2	서창동 산38-1	1.5㎞	1	
3	당초	남동공단~서해안고속도로 (광3-6)	양측	남촌동 625-59	도림동 72-2 (대1-20)	2.7㎞	2	재공고
	변경	**비류대로**	**북측**	**논현동 1-30**	**남촌동 625-59**	**4.2㎞**	**1**	
			남측	**남촌동 625-62**	**논현동 1-30**	**4.1㎞**	**1**	
4	당초	소래선 (대1-20)	동측	수산동 7	논현동 33-179	4.5㎞	1	기 허가 완료 (노선 현행화)
	변경	소래로	동측	논현동 33-36	수산동 7	4.4㎞	1	
5	당초	호구포길 (대1-13)	동측	구월동 551-3	도림동 599-15	3.9㎞	2	양측 각 1개소
			서측	구월동 550-1	도림동 599-17			
	변경	**호구포로**	**동측**	**논현동 513-3**	**구월동 551-3**	**4.0㎞**	**1**	**서측 폐지**
6	변경 없음	소래로	서측	수산동 596-1	논현동 33-146	4.2㎞	1	기 허가 완료
7	변경 없음	매소홀로	남측	구월동 826-16	수산동 30-17	2.3㎞	1	

☐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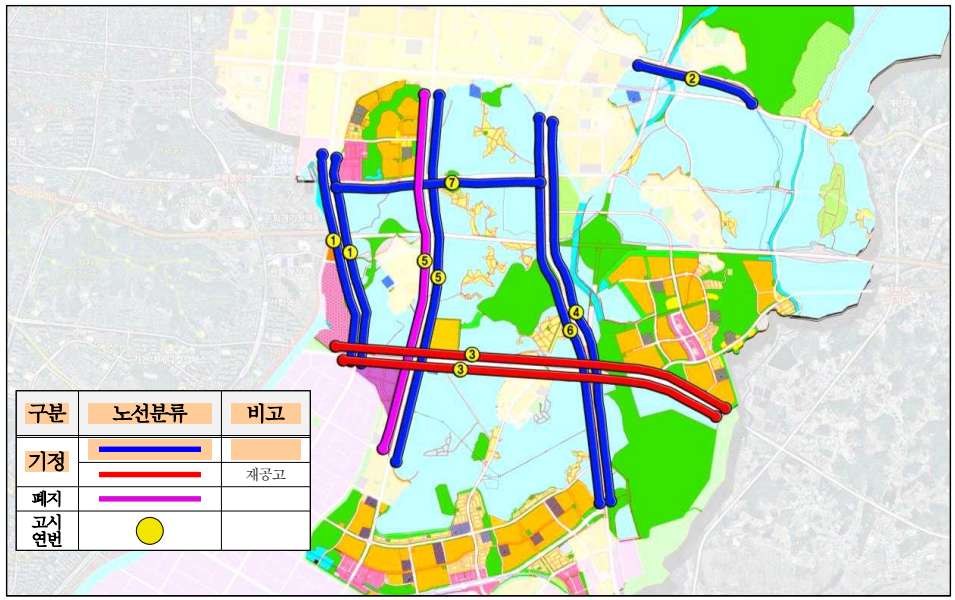

☐ 주유소 배치계획 세부도[재공고 노선(비류대로 남측 · 북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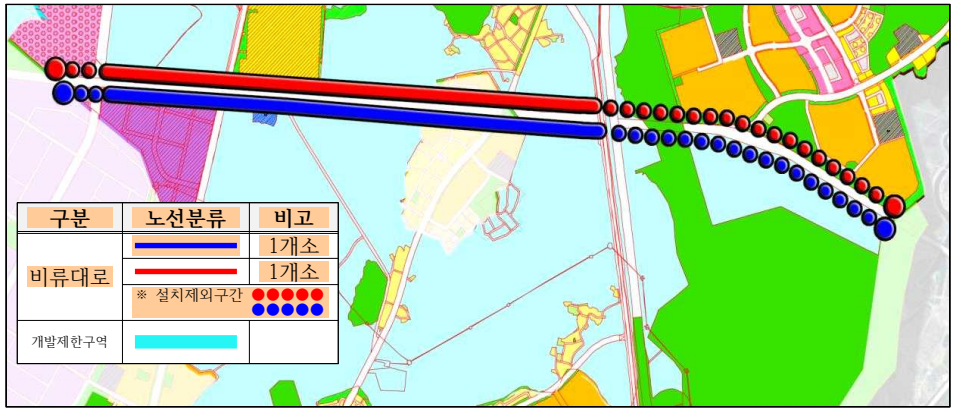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주요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주유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주유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주유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이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직선거리로 25미터 이하 구간은 제외
-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하 구간은 제외

□ 주유소 배치계획 세부도[폐지 노선(호구포로 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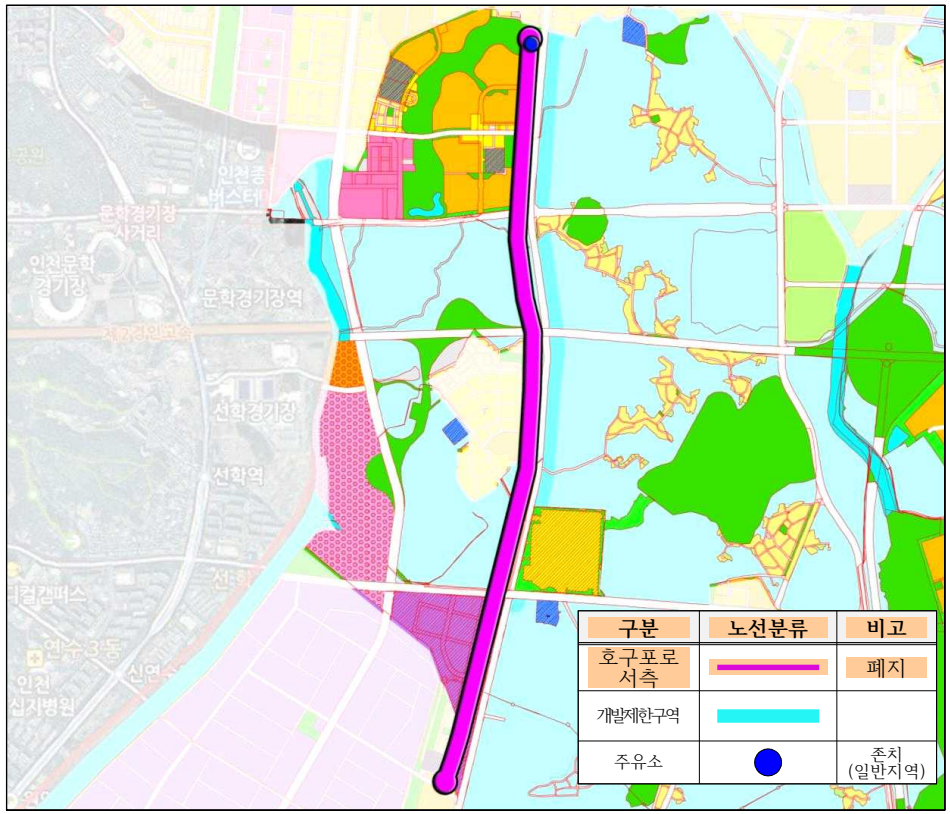

【별표 2】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주유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1]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 첨 요 령	비 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시설규모(지하 석유저장시설의 건설 및 보유계획서,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건설계획서),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기재) 3부. 2.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3부. 3. 등기부등본(토지) 1부. 4.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1부. 5. 주유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3부. 6.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3부. 7.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2 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호 서식) 각 1부. 8.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호 서식)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19.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사업신청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외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기 위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거짓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제출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생활경제과 협의 내용]

[별표 2] <개정 2018. 4. 30.>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비고

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서울특별시	그 밖의 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라.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저장소를 말한다) 또는 취급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4호의 취급소를 말한다)일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마.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요건 :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저장시설 2) 수송장비	4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수송장비	 15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2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
2) 자본금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비고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제1호의 거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없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2.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 요건

구분 \ 지역	전국
저장시설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8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요건)

①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이 가능한 대상지역은「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②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환경여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경여건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다음 시설 등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 제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로부터 25미터 이상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50미터 이상

③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 2]에 의한 주유소 등록요건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은 1개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상 설치하고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등록신청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등록을 받은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내용]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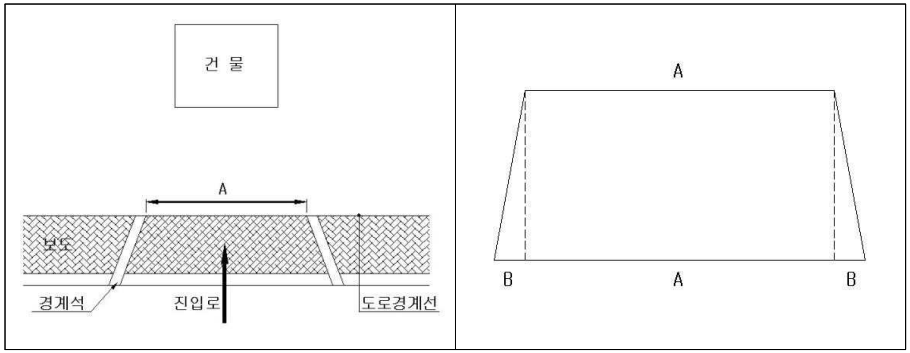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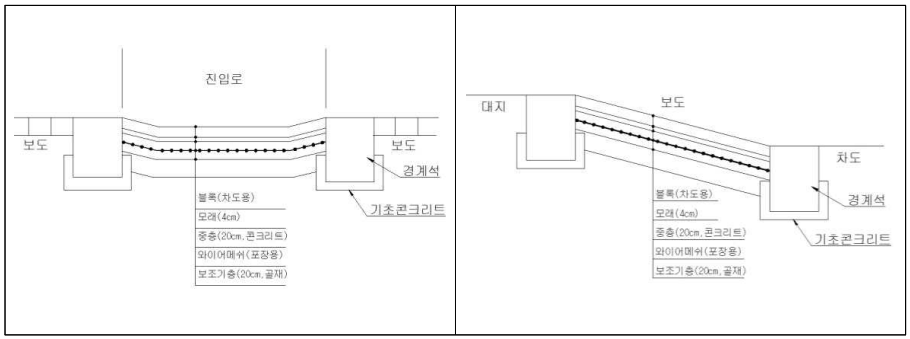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1)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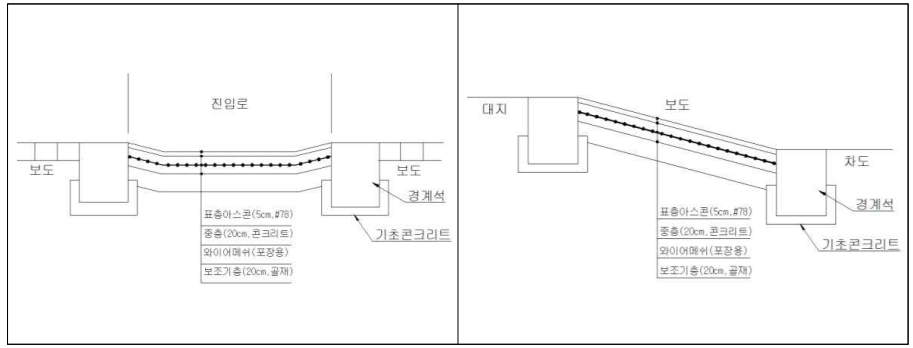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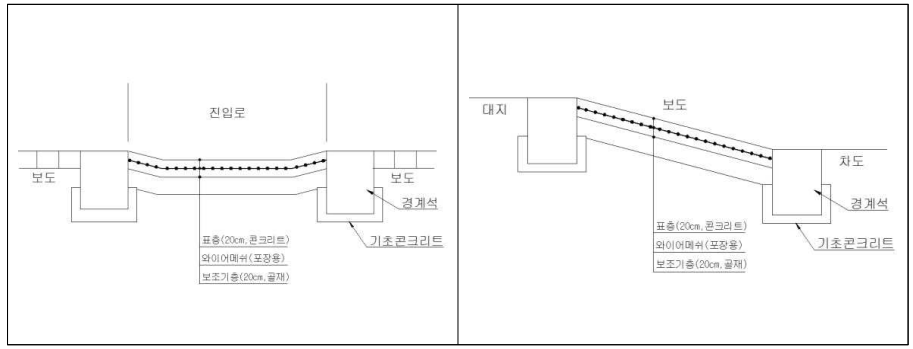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9-82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등 변경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등 변경 및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배치지점"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위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배치계획에 포함한

다.

5.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재공고 배치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와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나) 규정을 따라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허가 허가 신청 전에 이 고시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설치대상자로 선정 받아야 하며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격

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이거나,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자로,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가), 나) 및 라) 규정을 따른다.

② 입지기준

가.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나 우량농지는 제외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진출입로 불허구간에 해당하는 구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다.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라.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고시에 의한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된 기존의 주유소를 폐지하고 충전소로 용도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 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 · 유치원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의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신청지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한다.

자. 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나.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제5조(타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도로법, 산림기본법, 학교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환경관계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남동구 및 인천시 시·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재공고·신규 배치노선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재공고 배치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에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 상 1세대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은 서류검토 후 적정 등록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⑤항의 선정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순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별표3]의 추첨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⑤ 설치대상자 선정순위

1순위 : 도심 내 기존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기존의 충전소를 폐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이 경우 폐쇄된 충전소 부지에 재설치 불가)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3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5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⑥ 공람기간 : 2019. 6. 28. ~ 2019. 7. 28. (31일간)

⑦ 접수기간 : 2019. 7. 29. ~ 2019. 8. 2. 18:00까지 (5일간)

⑧ 신청기간 중에 신청 접수자 및 선정자가 없는 배치계획상 재공고 배치노선과 신규 배치노선은 다시 공고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⑨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용도변경금지 등)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명의변경 금지)

1.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는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득한 후「개발제한구역법」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주유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수기간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 이 고시 시행 시 당초 고시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는 모두 폐지한다.

제4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배치노선상의 충전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공고 노선에 위치한 기존 허가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용현황을 감안 이 고시에 따른 충전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당초 배치계획에 따른다.

문 의 처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032-453-2970)
생활경제과 친환경에너지팀	(☎ 032-453-6120)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 배치계획

연번	구분	배치노선 명 (해당 도로)	구간현황			연장	충전소 배치정수	비고
			구간	시점	종점			
1	당초	남동대로-비류대로-호구포로	1구간	구월동 786	구월동 561-1	6.0km	2 (방향별 1개소)	기 허가 완료 (노선 현행화)
	변경	남동대로-비류대로-호구포로	1구간	구월동 826-2	수산동 195-1	4.3km	1 (안쪽)	
				구월동 847	구월동 551-1	5.7km	1 (바깥쪽)	재공고
2	변경 없음	인주대로-수인로 (시흥방향)	2구간	만수동 576-1, 576-7	시흥시계	3.0km	1	기 허가 완료
3	변경 없음	백범로-수인로-인주대로 (남동정수사업소 → 동부교육청 방향)	3구간	만수동 590-2	만수동 576-1	3.0km	1	허가 신청 중 - 배치지점 - 장수동 488-3번지 장수동 488-9번지 장수동 489번지
4	변경 (신규)	소래로-비류대로	4구간	수산동 7-3	남촌동 150-4	4.1km	1	신규노선
5	변경 (신규)	호구포로-비류대로-소래로	5구간	논현동 513-3	논현동 33-151	4.2km	1	신규노선

☐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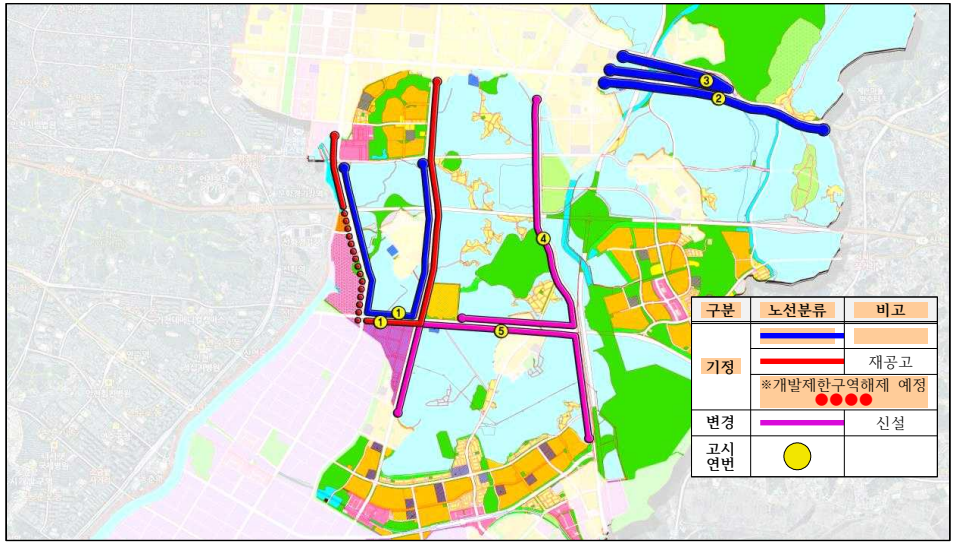

☐ 충전소 배치계획 세부도[신설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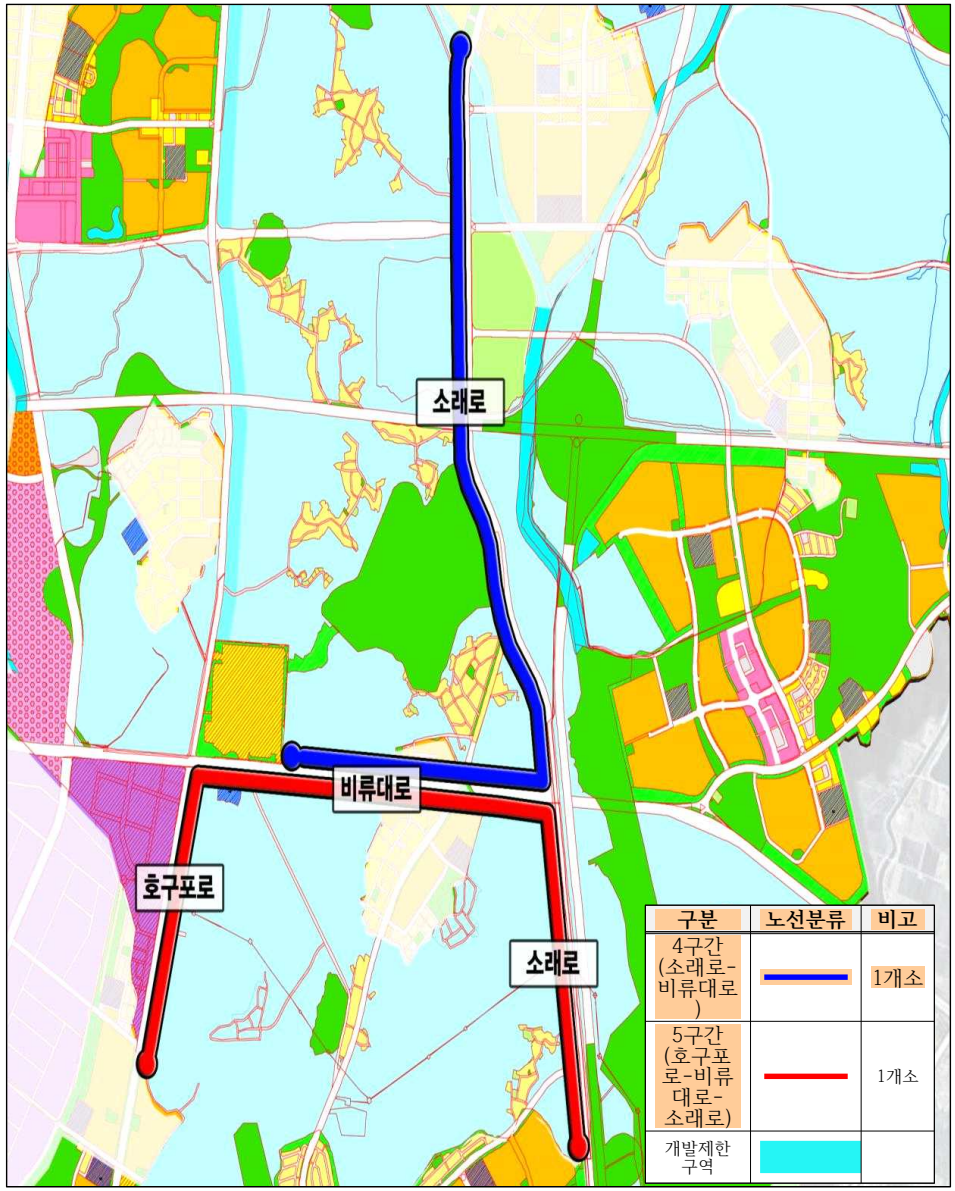

☐ 충전소 배치계획 세부도[재공고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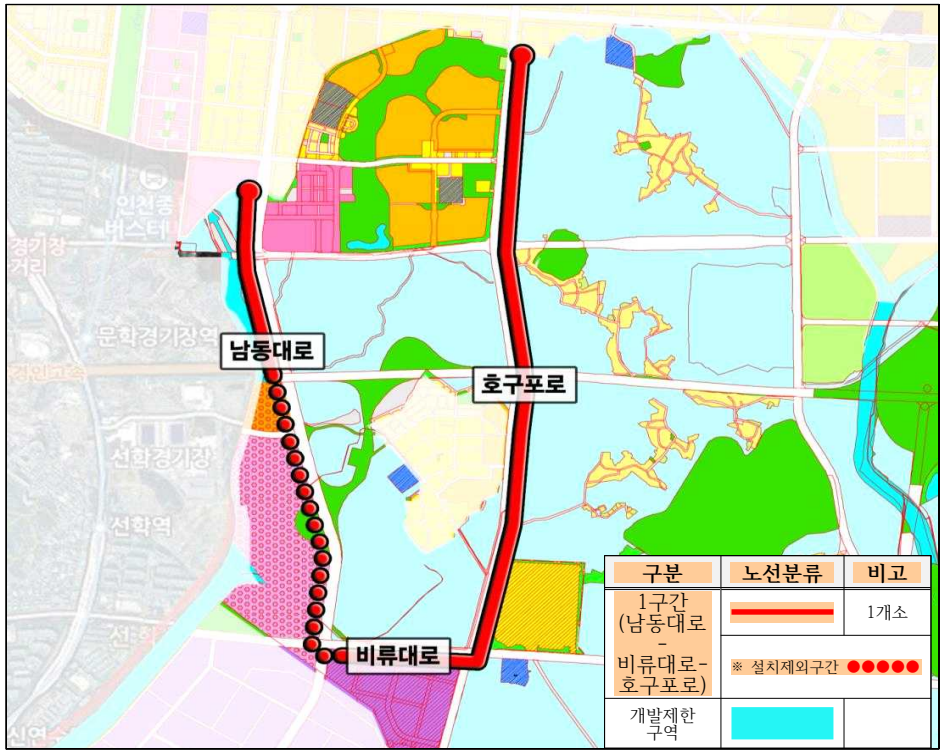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포함)은 충전소 설치 구간에서 제외(다만 신청지가 상대보호구역일 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지 않음)

2) 해당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1> 광역

【별표 2】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자격 및 증명서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동 시행령 별표1 5호 마-10)

충전소 신청자격	확 인 기 준
○ 도심의 기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	○ 남동구 관내 충전소 운영자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2)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②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주민등록 초본·등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생업을 위한 거주사유 증빙자료 ①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별지2) ② 대상 취학생의 주민등록 초본·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대상 취학생의 졸업 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등 증빙자료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동일 선정순위자 우선순위 추첨 요령

구 분	추 첨 요 령	비 고
1. 추첨장소 입실제한	○ 민원접수 1건당 신청인(또는 대리인) 1인만 입실 ①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명찰 또는 공무원증 패용) ○ 필요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1~2명 입실	
2. 추첨권 부여	○ 추첨권자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지참서류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②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③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경우)	
3. 추첨방법	○ 추첨순위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민원서류 접수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호명하여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각자 1매씩 추첨 ③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서명 후 임시보관 ○ 우선순위 결정 추첨 ① 추첨함에 노선별 동일순위자 수 만큼 순위를 번호별로 기재한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담당공무원이 투입 ② 추첨순위 순서대로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 번호 호명 ③ 담당공무원이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서명된 추첨순위 결정용지를 확인 및 회수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우선순위 결정용지를 각자 1매씩 추첨 ④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추첨된 우선순위 결정용지에 주소, 성명, 노선명, 신청지번, 전화번호 기재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⑤ 우선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명부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목적, 시설규모,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재원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기재) 3부 2.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2부 3.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3부. 4. 등기부등본(토지) 1부. 5.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1부. 6. 충전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횡단면도), 현황실측도 3부. 7. 주변상황(공동주택, 의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이격거리 등) 표시도면 3부. 8.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서류(【별표 2】 참조) 및 심사서류(별지2서식) 각 1부.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별지3서식) 1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당시 거주자 심사요청서

신청인		
항목		
본적		
현주소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거주	일자	
	주소	

구역 외 거주기간	사 유

2019. . .

제출자 성명 : (인)

주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

상기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사업신청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외 필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최초 시행하기 위하여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거짓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제출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생활경제과 협의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2호, 2019. 3.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6302호, 2019.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8. 12.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

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세이프티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각(二重殼)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그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용기 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과 충전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 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출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 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 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 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용기 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1) 용기 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2)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충전용기(내용적이 5 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5)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燈火)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6) 용기 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해 놓을 것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가 공기 중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3)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않을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외부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졸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한 양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 다음의 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할 것

(가) 외관검사

①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찍힌 흠(긁힌 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나) 캔밸브와 용기밸브

①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을 것

②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다)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그 용접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2)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3)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이 불량한 용기에 대해서는 가목8)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2℃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를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본다.

(2)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 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에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자)까지, 1)파)·1)거)·2)가)·2)나)·2)라)부터 타)까지, 2)하)·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 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를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로딩암, 충전기, 충전호스, 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10)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1)사)·3)마)·3)바)·4)다)·6)아),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2)자)·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 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할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2)아)·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 2)사)부터 하)까지, 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1)너)·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 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10.01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4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 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하며,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의 노후로 인한 증설없는 시설의 변경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동일부지 내에서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시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허가요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0. 1. 조례 제10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건설과 협의 검토]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 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부칙 <제29634호, 2019. 3.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89호, 2019.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5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02-20>

시 공 기 준

(1) 평면도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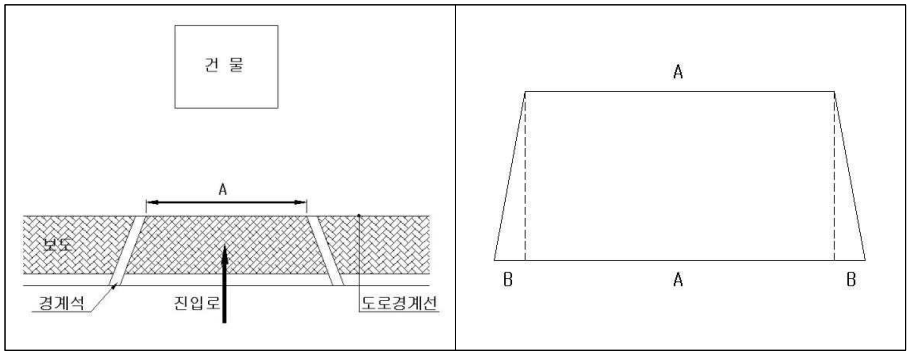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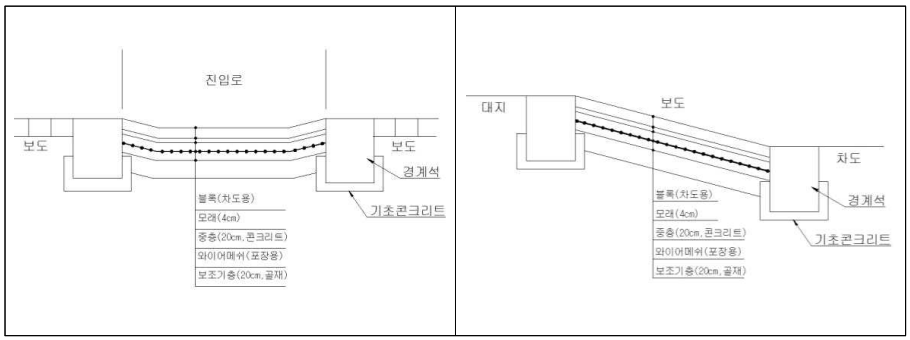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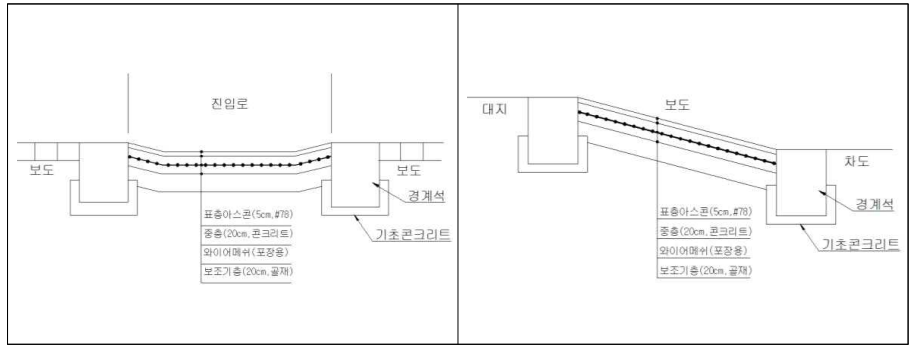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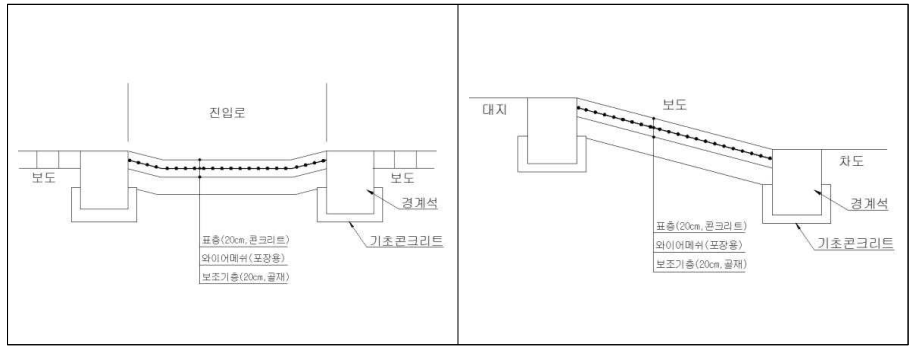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 도로점용 허가조건(차량출입시설)

1. **도로점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및 도로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식 : 점용면적×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0.02×12/12년】
3. 설치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별표]시공기준에 의할 것】
4. 권리의무의 승계시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도로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5. 도로관리청의 공공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전(설) 및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유지관리는 점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도로점용(인도포함)으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하고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점용구간내 지장물(전주, 맨홀, 도시가스, 통신관로, **가로수목**)은 진입로 설치시 까지 관계기관 및 **우리구(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허가기간 만료 후 도로점용 공사완료 확인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도로부지내 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도로점용 허가 받은 구역 외, 공사 중에 훼손시킨 인접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점용허가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에 표기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임.